

성가(聖家)의 빛

성가소비녀회

목 차

회헌 인준 법령	5
설립자 유언	6
서언	8
약어표	11
우리 수도회의 설립 배경	13
초기 회칙서 제1장 1조	16
제1장 영성과 사명	17
제2장 복음적 권고의 생활	21
축성된 정결	21
복음적 청빈	24
수도적 순명	26
제3장 기도 생활	30
제4장 성가정의 공동생활	32
제5장 강생의 사도적 생활	37
제6장 양성	46
제7장 수도회 운영	69
총원	83
관구	96
지부	117
회헌 준수와 권고	126
부록 회헌개정사	128

회헌 인준 법령

성가소비녀회

회헌에 대한 교구장의 인준

+ 평화를 빕니다.

귀 수도회에서 요청한 개정된 회헌 인준을 교구장이
신 염수정 대주교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수도회의 강생의 영성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며 세상과 교회의 필요
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예언적 소명에 충실하기를 바
랍니다. 새로 인준된 회헌이 수도회의 영성을 심화하고
사명에 충실하며, 수도회 운영에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
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3. 4. 27

천주교 서울 대교구

수도회 담당 교구장 대리 황인국(마태오) 몬시뇰

설립자 유언

성가회 소비녀들에게 일동!

여러 가지 전조로써 내가 오래 동안 살지 못할 것과 같고 마지막 큰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무슨 병, 무슨 고통 주실까, 물론 내가 모르나 결정하신 대로 내가 미리 모든 경우를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의 성총의 도움을 겸손히 청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무수한 은혜에 대하여 - 부모님과 나의 성소부터 -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935년 7월 7일 신품성사 받는 날 천주께서 옷사람 통하여, 그날 또 한국에 보내시고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계속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써 내가 이 보다 사랑의 더 큰 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무수한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희망 다만 주님의 인자하신 마음뿐입니다. 나의 신덕은 다만 교황 믿는 것뿐입니다.

성가회 소비녀들 여러분... 나의 영적 딸들아! 너희와 함께 살아 있는 동안에 나의 잘못을, 나의 죄악의 유혹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 완전하시니 사람뿐인 나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구해 주시기를 애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살아 있는 동안에 나는 행복스럽게 잘 지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내하여 참아 주셨고 수 십 가지 방법으로 잘 지내도록 마련하셨고 효성까지 바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나시오 수녀와 베아드릭스 수녀 또 잊지 않겠습니다.

성가회 창립문제에 대하여 25주년 인쇄한 조그만 책에 할 말을 기록하였으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읽어보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할 말이 많으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열심 중에 살으시오.

마음부터 열심치 안 하시면 수도생활 절대 헛된 일이며 또 위선한 일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주님과 항상 친하게 지내는 일이니 날마다 묵상시간에 천주님과 대화합시다. 그때에 수 십 번 주님께 사랑하시는 말씀을 올려 드리시고 그의 본뜻을 더 잘 알게 연구하시오.

수도원에 온 목적은 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다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 왔습니다. 물론 수도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가시가 있지만 신성의 유일한 길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양심평화, 직분의 완성된 만족, 자유의 취미를 잘 알겠습니다. 일할 때보다 묵상하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 서로, 서로 사랑하시오. 도와주시오.

다들 착한 수도자 되게 노력하신 것, 내가 직접 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주 기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행복은 가족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너희 본 가족은 지금 성가 수녀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시면 천당 같고 서로 미워하시면 지옥 같겠습니다 ! 누구나 다 어려운 난사를 당합니다. 더구나 요세 시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 다 같이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언니, 자매 수녀들 사랑하며 서로 도와드립니다. “합심”은 너희 문장입니다. 이것만 우리의 힘이며 우리 행복입니다. 받는 자보다 바치는 자에게 기쁨이 더 큼니다.

3.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시오.

그것이 소비녀 본 생활이며 또 특히 우리 사랑하온 예수의 본 모범과 원의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특히 총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비한 몸인데,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물리치면 예수의 신비한 몸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성교도 아니라, 왜냐하면 성교는 가난한 이들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돈을 너무 좇다 보면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주립니다. 돈만 욕심 많은 자 중에서 일부러 자유로이 가난함을 선택하신 수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실 만큼 주님의 강복을 더 받고 더 많은 결

과를 거둘 것이며 일반 사회의 사랑과 인심을 얻을 것입니다.

소비녀들아! 해 보시오! 주님의 안배를 꼭 믿어주시오. 주님의 강생을 계속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내려야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교만한 자와 악한 부자들을 싫어하셨습니다.

4.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범적으로 잘 공경하시오.

저들에게 순명하시오. 특히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주 거룩한 성직자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극기 희생 많이 바치시오. 신자들의 열심은 대개 항상 성직자들의 열심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천주님 앞에 다시 만나 보자. 안녕. 아버지 성신부

1972. 12. 25 성가회 시작한지 29년 후

서 언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히브 8,10)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며 설립 카리스마를 구현하시는 수녀님들께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수도회 설립 70주년 ‘출발의 해’에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인도할 ‘성가(聖家)의 빛’이 완성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빛이 생기어라”하시자 빛이 생겨나 세상을 비춘 것처럼, ‘성가의 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빛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시대적 통찰력으로 특히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삶으로 실천하신 설립자 신부님의 설립 카리스마를 이어가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2007년 제 14차 총회에서 통과된 회헌과 회칙을 임시승인 받고 6년간 살아왔습니다. 2013년 1월 제 15차 수도회 총회에서 검토하고 수정한 회헌과 회칙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27일자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주교님

으로 부터 정식 인준을 받음으로써, ‘성가(聖家)의 빛’은 강생의 영성과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성가(聖家)의 빛’은 우리의 영성과 사명은 물론 수도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8년 12월 28일 성가정 축일에 의정부 관구와 인천 관구로 분할되어 한 회기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회기를 시작하면서 ‘성가의 빛’은 우리가 같은 뿌리를 지녔음을 인식시키고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성가(聖家)의 빛”은 법조문이 아니라 설립자의 영적체험을 보여주는 영성의 표현이며 우리 수도회에 드러난 하느님의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구체화하고, 알아듣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영성지침이자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 주는 책으로써 복음서 다음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육화되고 마음의 법으로 새겨져 삶으로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 왔다.”(마태오 5,17)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이나 예언서의 정신을 살려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가(聖家)의 빛’을

사랑으로 지킬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성가(聖家)의 빛’을 우리의 존재와 활동의 지표로 삼고 자유의지로 순명하고 시대에 적응하며 더욱 쇄신되어 충실한 여종으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설립자 신부님께서서는 “예수님의 회칙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 먼 이를 보게 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나환자들에게 치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이신 분의 사랑을 주겠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강론집 다해, 124쪽)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가(聖家)의 빛’이 우리 삶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는 빛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의 전구와 설립자 신부님의 전구를 간구하며 ‘성가의 빛’을 바칩니다.

2013년 4월 27일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

약어표

- 교회법전 : 교회법
전례헌장: 거룩한 전례헌장에 관한 헌장
교회 :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계시 :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사목 :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수도 : 수도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평신도 :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증거 : 복음의 증거
노동 : 노동하는 인간
양성 : 수도자 양성의 쇄신에 관한 훈령
수양 : 수도자 양성 지침
봉헌 : 봉헌생활
복음 : 현대의 복음 선교
지침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천년 : 새천년기
공동 : 공동체의 형제생활
유언 : 설립자 유언서
성재1 : 성재덕 신부 제1집
성재2 : 성재덕 신부 제2집
서간 : 소비녀들에게
초기 : 초기회헌
창립25 : 창립 25주년 기념집

우리 수도회의 설립 배경¹⁾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는 1943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파리외방전교회 성재덕 베드로 신부 (Rev. Pierre Singer, M.E.P. 1910-1992)가 서울 백동(栢洞, 현 혜화동)에 세운 교구 설립 수도회이다.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는 1910년 9월 13일 프랑스 에덴(Hesdin)에서 태어나 1935년 7월 7일에 사제품을 받고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우리 수도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설립되었는데, 그 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 아래에서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 피난민들과 부상자들, 굶주리고 헐벗은 고아들이 생겨나는 등 전쟁에 따른 온갖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설립자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하느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²⁾

1) 창립 25, 13-16

2) 교회 1

설립 당시 혜화동 본당 주임 사제였던 설립자는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성소를 갈망하는 여러 젊은 여성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가톨릭 신학교에 있던 공안국 안토니오 신부, 이재현 요셉 신부와 함께 의논하여 하느님의 일을 위해 이들을 속히 모으는 것이 좋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혜화동 본당은 근처에 신학교와 가르멜 수녀원이 있어 가톨릭 정신과 영성적 도움을 얻는 데 합당한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설립자는 이들 중 몇 명을 불러 “여러분이 혼자 지내면 위험도 하고 어렵게 일을 해도 큰 결과를 거두기 어려우나 함께 뭉치면 많은 공로를 얻을 수 있고 완전한 수도생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³⁾라고 권하였다.

1943년 12월 25일, 혜화동 본당 성모상 앞에서 설립자의 제안에 따라 공동생활을 바라는 지원자들이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며 순명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신 성모님께서서 “...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⁴⁾ 성 김효임 골룸바와 성 김효주 아네스가 재판관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대답한

3) 창립 25, 14-15

4) 루카 1,38

것을 생각하여 자매들을 ‘소비녀’라 부르기로 하였고, 수도회를 ‘성가소비녀회’라 명명하였다.⁵⁾ 설립자는 프랑스 아숨시옹 수녀회를 모델로 하여 우리 수도회를 시작하였고,⁶⁾ 소비녀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깊은 신앙 안에서 오직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였다.

설립자는 소비녀들이 합심하여 완전한 수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재현 요셉 신부와 함께 규칙을 만들어 1945년 7월에 서울교구장 노기남 주교의 승인을 받고 1949년 2월 3일 교황 비오 12세의 추인을 받았다.

5) 초기 2

6) 서간, 17

서울 성가의 소비녀회는 교구관하의 단체니
그 회원들은 신빈 · 정결 · 순명의 세 가지
단식 공적 허원을 발한다.

모든 수도회와 같이 본회의 일반 목적은

주의 영광을 현양함과

허원 및 수도회 규칙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성화를 도모함이고,

특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적인 봉사를 함이니

즉 빈약한 자, 병자, 불구자, 무의무탁한 자들을

수용하여 보육하고 간호하며 치료함으로써

성교회의 좋은 명성을 일반 사회에 인식시키며

또한 웃어른의 판견으로

교구유익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사업 등을 실시함이다.

<초기 회칙서 제1장 제1조>

제1장 영성과 사명

천탄에 예수 하늘에서 땅에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비녀들도 앞으로 더욱
예수님과 같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 중에
내리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⁷⁾

1. 성가소비녀회는 복음적 권고를 서약함으로써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하고자 모인 사도적 수도 공동체로서 서울대교구 설립 수도회이다.⁸⁾ 성가소비녀는 복음과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헌신한다.

영성

2. 성가소비녀회의 영성은 강생이다. 강생은 하느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신비로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⁹⁾ 따라서 소비녀의 강생은 자기 비움과 겸손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키우고 살리는 것이다.

7) 서간, 34

8) 교회 44

9) 필리 2,6-7

2-1

성가소비녀의 정신은 종의 정신이다. ‘나는 소비녀, 가난한 이의 하녀’ 10)라 생각하고 서로 소비녀라 부르라고 설립자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뻐하라 소비녀¹¹⁾

만일 너를 몰라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도 기뻐하라
만일 네 정신과 육신이 못생겨도 기뻐하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네 뜻을 반대해도
기뻐하라
만일 네게 천한 일을 시켜도 기뻐하라
만일 너를 쓰지 않아도 기뻐하라
만일 네 뜻을 청하지 않아도 기뻐하라
만일 너를 믿어 주지 않아도 기뻐하라
만일 너를 말썬으로 두어도 기뻐하라
만일 너를 한 번도 찬양하지 않아도
기뻐하라
만일 너를 모든 사람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 하여도 기뻐하라

10) 서간, 71

11) 설립자 친필 자료 1950.4.20

사명

3. 성가소비녀회의 사명은 강생의 예언적 소명을 이 세상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권리나 존엄을 지켜나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파견된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¹²⁾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세상에 보여 준다.¹³⁾

3-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비체를 이루게 된다. 우리의 사명 실현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들과도 연대하여 하느님 나라 확장에 적극 협력한다.

4. 우리는 교회와 인간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세상에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표지가 된다.¹⁴⁾ 복음과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시대의 징표를 올바르게 알아듣고 소비녀의 소명에 적극

12) 창립 25, 18

13) 성재2, 120

14) 로마 8,24-25; 성재2, 191; 서간, 52

적으로 응답한다.

4-1

설립자는 ‘합심’¹⁵⁾을 우리의 문장으로 삼으셨다. ‘합심’은 하느님과 일치하여 공동생활의 친교를 이루는 것으로 축성생활의 표징이 되며 사도직을 수행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우리의 합심은 오늘날 인종, 성, 빈부, 이념 등 다양한 양상으로 갈라진 이 시대에 ‘일치’의 예언적 증거가 된다.¹⁶⁾

5. 성가소비녀회의 주보는 예수 마리아 요셉이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나자렛 성가정은 신앙 안에서 친교와 일치를 실현하는 장소이며 우리의 영적인 샘이다.¹⁷⁾ 소비녀는 삶의 현장 안에서 성가정의 가난과 겸손, 순명과 노동, 침묵의 사도적 관상생활을 한다.

5-1

나자렛 성가정은 예수님의 강생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자리로서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찾으며, 공동의 목적과 사명을 중심으로 모인 믿음과 사랑의 공동

15) 유언

16) 봉헌 84

17) 공동 18

체이다. 우리의 공동체 역시 신비적 의미를 갖는 영적 가족이다.

5-2

예수께서는 나자렛의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 노동을 하며,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셨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인 사도직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무의무탁한 이와 자기 자신의 생활을 유지한다.

제2장 복음적 권고의 생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처럼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¹⁸⁾

6. 축성생활은 복음적 권고의 삶으로 세례성사의 의미를 심화하고 완성하여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서원을 통한 봉헌은 부활 신비의 표지로 모든 사람이 거룩함에 부름 받았음을 일깨우며, 공동체의 친교와 일치의 삶으로 하느님 나라를 증거 한다.¹⁹⁾

18) 강론집 나해, 165쪽

6-1

복음적 권고는 하느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그리스도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이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주고, 정의를 행함으로써 세상에 예언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룬다.

7. 정결 청빈 순명의 서원은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온전한 자유 의지로 하느님께 드리는 완전한 봉헌이다. 우리는 서원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세상 안에 공동선이라는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적 삶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8. 소비녀는 서원으로 하느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며 애덕의 완성을 이룬다. 축성생활의 탁월한 모범이신 성가정에 의탁함은 소명에 따라 한결 같이 충실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다.²⁰⁾

19) 1베드 1,15

20) 봉헌 28

서약문

나 () 소비녀는
성령의 은총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요셉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에 충실하게 살며,
하느님과 이웃 사랑에 헌신하고자,
총장/관구장 () 소비녀와
수도 공동체 앞에서 정결, 청빈, 순명의 서원을
성가소비녀회의 회헌과 회칙에 따라
()년 동안/종신토록 지킬 것을
하느님께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수도명) 소비녀

축성된 정결

10. 축성된 정결은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무상의 은총이다. 우리는 정결 서원으로 사람과 사물과의 그릇된 관계와 이기심에서 해방되고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져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도직에 헌신한다.

10-1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매체와 통신 수단을 복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의식하여 분별력 있게 사용할 것이다.

11. 정결 서원을 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생활의 의무를 지킨다. 우리는 독신생활에서 오는 고독의 순간을 은총으로 받아들여, 십자가에 희생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친밀하게 따르며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

11-1

정결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 대한

열망으로 기도생활에 충실하며, 일상 안에서 사도적 관상기도가 지속되도록 한다. 공동체는 봉쇄 구역을 정하고 침묵 장소와 시간을 지키되 사도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2. 정결은 세상의 선익을 위하여 하느님의 마음으로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인간을 돌보며, 세상 안에서 친교와 생명의 공동체를 일으키는 탁월한 선물이다.

12-1

정결 서원으로 우리는 지성, 의지,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하며,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수도자로서의 신분과 소재를 분명히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과 사건을 보는 능력을 성장시킨다.

12-2

정결은 사랑을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특별히 소비녀는 동정자의 모범이시며 우리 주보이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전구를 청하며 형제적 공동생활, 충실한 기도생활과 노동으로 정결의 은총을 살아가도록 서로 돕는다.

복음적 청빈

13. 복음적 청빈은 하느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세상의 것에 애착하지 않는 것이다.²¹⁾ 소비녀는 청빈 서원으로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14. 수도적 청빈은 나자렛 성가정에서 노동을 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삶이다.

청빈서원을 사는 소비녀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시대와 장소에 자발적으로 적응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로부터 소외된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나눔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예언적 표징이 된다.²²⁾

14-1

우리는 정의와 평화, 생태환경 등에 대한 의식과 민감성을 키워나가며 이를 위해 투신한다. 또한 고통 받고 있는 이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상황

21) 마태 6,24; 19,21

22) 2코린 6,10; 수도 13

에 맞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함께 한다.

15. 성가소비녀회가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재산은 초대 교회의 생활 모범대로 공동으로 소유하며 복음전파를 위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5-1

공동체는 재정상황, 예산을 점검하여 공동체와 개인이 실제로 청빈을 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실천한다. 장상은 보다 더 필요로 하는 공동체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눈다.

15-2

수도회에서 지급되는 돈은 사용 후에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책임자는 관대하고 분별력 있는 태도로 정의와 사랑의 원칙에 따라 소비녀들을 도와 줄 것이다.

15-3

사도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으며, 수도회에서 필요할 때 이의 양도를 거절할 수 없다. 우리는 자기 노고에 대하여 어떤 특전도 요구할 수 없으며, 우리가 받는 급여, 연금은 모두 수도회에 속한다. 우리는 공

~~동체와 무관한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총장(관구장)에게 관면을 받는다.

16. 우리의 사도직 활동과 노동이 이윤과 능률추구가 되지 않도록 식별하고 검토한다. 우리는 성가정의 가난 정신을 본받아 자기 자신과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것을 생활화한다.

16-1

우리는 자신의 물질과 재능, 시간과 건강 등을 공동체와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눈다. 일을 할 때에는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외부인을 고용했을 때는 노동법을 따르며 예수님안의 형제자매로 대할 것이다.

17. 소비녀는 청빈서원으로 완전한 자기 이탈을 추구하며, 겸허하게 낮은 자리, 힘든 일을 선택하는 극기와 희생을 통하여 사도적 자질을 갖춘다.

18. 청빈 서원을 한 우리는 장상의 허락 없이 재물을 자유로이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권리를 포기한다.

18-1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보증이나 증인을 설 수 없으며 담보, 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상의 서면 허가를 받는다.

19. 소비녀는 재산의 소유권과 합법적 유산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1) 첫서약 전에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의 관리와 사용 수익권을 원하는 이에게 맡겨야 하며, 재산 처리에 대한 자신의 원의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종신서약 전에는 국법상으로도 유효한 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로 이러한 사항들을 변경하거나 소유재산의 대차, 증감 등 사유 재산에 관한 어떤 행위를 하려면 총장(관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²³⁾

서약 후 생기는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 원의서를 재작성한다. 재산 처분 원의서는 총장(관구장)의 동의 아래 변경할 수 있다.

2) 종신서약을 한 후에도 자기 재산의 소유권은 보존할 수 있으며, 유산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재산의 취득권도 가질 수 있다. 다만 합법적 관리권의 행사는 총장(관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3) 교회법전 668,1·2

20. 서약자가 자기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자 할 때 총장은 총평의회 동의(를 얻어 허락할 수 있다.²⁴⁾

20-1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종신서약 후 적어도 10년이 경과한 뒤에 하도록 한다. 사유 재산 포기를 위한 증서는 민법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어떤 회원이 퇴회를 한다면 수도회에 양도한 양도 행위는 구속력을 잃고 유언장과 상속재산은 그에게 돌아간다.

수도적 순명

21. 수도적 순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더욱 확고하게 결합하는 것이다.²⁵⁾

22.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닮아 사람들과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느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 소비녀는 설립자의 말

24) 교회법전 668,4

25) 요한 4,34; 수도 14

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사람의 일일 뿐이고 순명으로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됨"²⁶⁾을 명심하며, 기도와 대화를 통하여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순명한다.

22-1

우리는 성령께 귀 기울이고 교회와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함께 찾아야 한다. 우리는 회헌과 회칙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며 올바른 양심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한다.

23. 소비녀의 순명은 인간을 성장시키고 생명이 존중되도록 책임 있게 협력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23-1

장상과 공동체 책임자는 개인과 공동체와 서로 소통한다. 소비녀는 사람,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불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대담성을 지니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

26) 성재1, 13

23-2

소임이 바뀌는 순간은 순명 실천의 좋은 계기가 되며,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때이다. 장상은 중대한 경우 주님의 이름으로 순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결정한다. 소임 이동시에는 가능한 한 새 소임에 대한 지식과 준비를 갖추도록 배려한다.

제3장 기도생활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²⁷⁾

24. 기도는 성삼위 하느님과의 친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령께서는 기도 안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고 하느님 나라를 증거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기도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할 때, 삶은 생명을 준다. 소비녀는 나자렛 성가정에서 침묵의 관상과 노동생활을 하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도움으로 사도적 현장에서 기도하며, 세상의 온갖 불의와 고통에

27) 강론집 다해 277쪽

시달리는 이들과 연대하고 일치될 이름으로써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 한다.

24-1

주보이신 예수 마리아 요셉께서는 소비녀들이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에 동화되도록 도와주신다. 소비녀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예수 마리아 요셉께 의탁할 것이다.

24-2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공동체의 사명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봉사하며 교회의 사명에 협력하고 강생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25. 소비녀의 기도는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에서 영성과 사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사도적 힘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복음적 삶으로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룬다.

25-1

우리는 사도적 활동 수도자로서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결실을 맺는다.

일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공동체 생활계획을 세우고 공동체와 사도직의 특수성에 따라 공동기도 시간을 조정한다.

26. 교회 생활의 정점이며 근원인 전례헌장 기도는 영성 생활의 양식이다.²⁸⁾ 우리는 전례헌장 기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며 끊임없이 쇄신된다. 또한 공동체의 중심인 말씀과 성체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며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할 힘을 얻는다.

26-1

우리는 성체 중심의 삶에서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친교와 나눔을 실제적으로 육화해 나가며, 사명을 실천할 힘을 얻는다.

27. 성무일도는 교회의 기도이며 시간을 축성하는 전례헌장으로 미사성제에서 드리는 찬미의 연속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로 개인과 공동체를 성화하며 세상의 요구와 필요를 하느님께 맡겨드린다.

28) 전례헌장 10

27-1

우리는 수도회설립기념일인 예수성탄대축일, 주보 축일인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축일, 성요셉 대축일, 주님탄생예고 대축일, 설립자 기일(2월 26일) 등을 기억하여 경축한다.

28. 우리는 의식성찰과 고해성사를 통하여 마음을 정화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며 하느님과 지속적인 친교를 이룬다.

28-1

하루를 쇠신하는 의식성찰을 하고, 고해성사는 교회의 권유대로 자주 보는 것을 권장한다.²⁹⁾

29.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의 최고 규범이며 영성의 원천으로서 공동체를 일치시킨다.³⁰⁾ 우리는 매일 규칙적인 성경 독서를 함으로써 영적 쇠신을 이루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

29-1

소비녀는 개인기도와 영적 독서를 하는데 충분한

29) 교회법전 664

30) 시편 119,105; 계시 21

시간을 가져야 한다.

29-2

장상은 개인과 공동체의 상황을 분별하여 영적 섬
이 필요한 회원들을 배려해 줄 것이다

30.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며 기도
와 피정으로 영적생활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서 수도자로서의 인격을 통합시켜 나간다.

30-1

저녁 성체조배는 사도적 성찰의 시간으로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 신앙의 눈으로 성체 안에 현존해 계시
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30-2

우리는 월피정과 연피정으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
며 영성생활에 활력을 얻어, 개인의 서원생활과 공
동생활을 쇄신한다.

31. 우리는 완전한 기도인 미사성제를 통하여 서로
기도해 줄 의무가 있다. 세상을 떠난 회원들과 영적
일치를 이루어 기도 안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또 우
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은 큰 애덕의 실천이다.

31-1

요양소에서 쉬는 연로하거나 병약한 소비녀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며 기도로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요양소의 기도 시간은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며 공동 기도와 개인 기도의 특징이 잘 보존되도록 할 것이다.

제4장 성가정의 공동생활

너희 본 가족은 지금 첨가수녀들입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시오, 도와주시오.

“합심”은 너희의 문장(紋章)입니다.³¹⁾

32. 우리는 교회의 친교 신비 안에서 수도 공동체를 형성하며 성삼위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이 표징이 된다. 소비녀 공동체는 설립자께서 말씀하신 ‘합심’을 문장으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와 일치를 이루고자 맺어진 영적 가족이다. ‘합심’은 사도직 상황 안에서,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지혜를 모으게 하고

31) 유언

마음을 일치시켜주는 우리의 영적 자산이다.

32-1

소비녀들은 매년 성가정 축일에 성대한 전례현장과 축제를 거행하여 성가정의 특은인 가족적 사랑과 기쁨을 나눈다.³²⁾ 이때에 공동으로 우리의 영성생활을 성찰하고 실제 생활을 계획하며 서약을 갱신한다.

32-2

관구장은 교회법과 설립자의 권고대로 더 나은 수도생활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공동체에 적어도 4명 이상의 소비녀가 함께 생활하도록 배려할 것이다.³³⁾ 우리 영성과 사도적 활동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각 분원에는 가능한 한 성체를 모신다.³⁴⁾

33. 소비녀 공동체는 복음화를 위한 사도직 활력의 원천이며 예언적 증거의 장이다.³⁵⁾ 우리는 개인의 은사와 직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충실한 유대로 인격적,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자신의 책임을 다

32) 요한 13,34-35; 초기 3

33) 교회법전 115,2; 초기 142:144

34) 교회법전 608

35) 공동 56

하여 공동체의 사명 실현에 참여한다.

33-1

소비녀는 나자렛 성가정의 일치와 사랑의 가족적 특은을 생활한다. 우리는 공동체의 친교 안에서 각 개인의 능력과 한계, 타고난 자질과 은사를 존중하며, 관계와 공동선을 위해 배려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체 성장에 기여한다.

33-2

우리는 서로 다른 책임과 직무에서 오는 차이 외에는 모두 동등하다.³⁶⁾

34.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 축성생활에 맞는 방법으로 동반하며, 서로 필요한 영신적 물질적인 지원과 배려를 한다.³⁷⁾

34-1

우리는 정기적인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공동생활과 사도직,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명수행을 위해 함께 계획, 식별, 실행, 평가한다. 공동체 모임의 횟수

36) 초기 57

37) 교회법전 619

나 형태는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한다.

34-2

장상은 연로하거나 병약한 소비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상은 이들의 축성생활이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생활과 휴식, 그리고 적절한 일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³⁸⁾ 소비녀들은 휴양과 휴식도 공동생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⁹⁾

35. 장상은 소비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동체의 중대한 문제와 관심사를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회원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바람직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한다.

35-1

수도회의 전체 관심사에 동참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도회 차원에서 소식지나 정기간행물을 발행한다. 분원 책임자는 수도회나 관구의 각종 소식지와 간행물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⁴⁰⁾

38) 교회법전 619; 초기 175

39) 초기 108

40) 공동 30

36.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환대하며 세상에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37. 소비녀가 생전에 성가정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이룬 친교는 죽음을 초월하여 더 깊은 영원한 유대로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깨어 기다리는⁴¹⁾ 지혜로운 소비녀가 되어야 한다.

제 5장 강생의 사도적 생활

수녀의 사도직 수행은 기쁘게 사는 것뿐입니다.⁴²⁾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시오.⁴³⁾

38. 교회에 맡겨진 모든 사도직의 원천은 성부께서 파견하신 그리스도이시다.⁴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활동에 힘입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⁴⁵⁾

41) 마태 25,13

42) 강론집 가해 164쪽

43) 유언

44) 요한 20,21; 평신도 4

45) 마태 28,18-20; 교회 17

39. 소비녀의 사도직은 복음과 설립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도적 생활은 설립자가 체험한 성령의 영감을 보존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성령의 활동에 마음을 열며, 그리스도의 강생을 계속 구현하는 것이다.

39-1

우리의 모든 사도적 활동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에게 온전히 봉사하는 삶이다. 사도적 활동의 목적은 가장 가난한 이들 안에서 강생의 삶을 계속하여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39-2

사도적 활동의 대상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난한 이들이며, 시대의 요청에 따라 수도회 영성에 맞는 가난한 이들이다.

39-3

사도적 활동의 방법은 서약한 모든 소비녀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시는 가난한 이를 최소한한 사람씩 돌보는 것이다.

40. 강생의 영성을 사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강생의 영성을 구현하는 우리의 사도직은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설립자의 말씀대로 가난한 이들의 처지로 내려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

40-1

소비녀는 복음 정신으로 우리 수도회의 은사를 사도직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이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정의와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

41. 소비녀는 순명과 겸손, 침묵과 정결, 사랑과 가난 속에서 기쁘게 노동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설립자께서 말씀하신 ‘기뻐하라 소비녀’를 사도적 자세로 삼아 강생의 사도적 생활을 계속한다.

42. 총장은 수도회의 설립영감, 영성과 사명에 따라 사도적 활동이 시대의 징표에 부응하는 것인지 총평 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통찰하고 식별해 나간다.

총장과 총평의회는 관구의 다양한 사도직을 주의 깊게 검토하며, 복음 정신과 설립은사에 부합해 나가도록 돕는다. 관구는 사도직과 사업을 행할 때 총장과 총평의회와 긴밀한 연계를 갖는다.

42-1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사도적 활동을 식별하여 신설하거나 폐쇄한다.

43. 성가정을 주보로 모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정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강생하셨듯이, 오늘날 사도직 현장에서 직면하는 가정 문제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가정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가정 성화를 위하여 우리의 영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평신도들과 연대하며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참여한다.

43-1

우리는 평신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도록 연대한다. 특히 우리의 협력단

체인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들이 세상 안에서 강생의 영성에 따라 가정생활을 복음화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반한다.

44. 우리의 선교 사명은 각 지역의 문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며 민족과 지역, 문화를 초월하여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적 수도회의 선교사로서 교회와 세상에 마음을 열고 우선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로 간다.

45. 사도적 생활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과 연대하는 삶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요청을 우주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식별하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선택과 응답을 한다.

45-1

우리는 서로의 상황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연계해 나간다.

46. 우리는 교회 일치를 위해 힘써야 하며,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 사랑으로 상호 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대화한다.⁴⁶⁾

47. 서원한 소비녀의 전 생애는 사도적 생활이다. 연로하거나 병약한 소비녀들은 인내와 기도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한다. 그들의 사도직은 그 어떤 활동보다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봉헌의 증거이며 모든 이를 위한 힘찬 봉사로서, 소비녀들의 사도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⁴⁷⁾

제6장 양성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훌륭한 후배 발굴과 양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소비녀 청신 억지로라도 얻으려고 일하는 것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⁴⁸⁾

수도자 양성

48. 수도자 양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생동안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가는 여정으로 인간적, 지적, 사도적, 영성적 자기 훈련을 통하여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양성의 목적은 회원들이 수도회의 고유한 정신과 사명을 통해, 세상과 교회의 초대에 능

46) 복음 53

47) 봉헌 44

48) 소비녀들에게, 83쪽

동적으로 참여하는데 준비되도록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전 존재를 헌신, 봉사하는 데 있다.

소비녀 양성

49. 소비녀의 양성은 설립 당시의 영감에 따라 강생의 영성과 사명을 충만히 살아가기 위해 개개인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양성을 책임진 회원들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의 성숙도와 개별 은사에 따라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양성에 주력한다.

50. 소비녀는 각자 자기양성에 책임을 지고, 서로 양성의 공동 책임을 진다. 모든 소비녀 양성의 최고 책임은 총장에게 있고, 관구의 책임은 관구장에게 있다. 총장과 관구장은 수도회의 양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고 체계적인 양성 계획에 따른 지침과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

51. 소비녀 양성은 교회의 법규범과 지침들, 그리고 우리 수도회의 양성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양성 단계

52. 우리 수도회의 양성 단계는 청원기, 수련기, 유

기서약기이며, 종신서약 후 계속수련으로 이어진다.

성소 계발

53. 소비녀는 성소 계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을 수도생활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소비녀는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수도 생활의 모범을 보여 준다.

53-1

총장(관구장)은 수도자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며 성소 계발에 특별한 관심이 있고 양성 능력이 있는 소비녀를 성소 계발 담당자로 임명(추천)하고 성소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든 소비녀들은 성소를 계발하고 도울 의무가 있다.

53-2

성소 담당자는 성소자들에게 수도생활의 본질과 목적,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카리스마를 분명히 알려 줄 것이다. 또한 성소자가 수도회의 영성을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원의와 자질을 갖추었는지 주의 깊

게 보고, 성소자 자신이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동반할 것이다.

입회와 지원기

54. 입회하려는 지원자는 우리 수도회의 고유한 삶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연령, 건강, 성숙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도회가 요구하는 증명서들을 제출하여야 한다.⁴⁹⁾

54-1

지원자의 입회는 양성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 총장 관구장이 결정한다.

54-2

입회 자격⁵⁰⁾

- 1) 믿음이 견고하고 동기가 건전하며 가톨릭 세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된 자
- 2) 성가소비녀회의 강생의 영성에 따라 가난하고 겸손한 소비녀의 삶을 살고자 열망하는 자
- 3)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성격이 원만하고 품행이 바른 자

49) 교회법전 645

50) 교회법전 641-644

- 4) 교회법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미혼 여성
- 5) 연령은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 예외일 경우, 총장 관구장은 성소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 받아들일 수 있다.
- 6) 일반적인 봉사 임무를 수행할 지적 능력과 분별력이 있는 자

54-3

입회에 관한 규정은 양성 지침을 따른다.

54-4

지원기는 청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예비 기간이다. 지원기는 각 개인의 성품과 더불어 그가 자라온 가정환경이나 교육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54-5

지원자들은 지원자 담당의 동반으로 기도생활, 공동생활과 단순 노동을 체험하며 우리 수도회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배우고 익힌다.

54-6

청원기가 시작되기 전에 만 3일 간의 피정을 한다.

청원기

55. 총장 관구장은 지원자 담당의 의견을 들어 지원자가 우리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합당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청원자로 받아들인다.

56. 청원기는 수련기를 준비하는 예비기이다. 청원기의 목적은 청원자들이 수도생활의 의무를 점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찾는 데 있다.⁵¹⁾ 청원기 동안 청원자는 자기 자신을 알고 성소의 동기를 정화하며, 공동생활과 사도직 실습을 통하여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을 배운다.

56-1

청원기는 청원자의 수도생활 지망 동기와 적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청원자 담당이 동반하여 교육하고 시험하는 수련 입문시기로⁵²⁾ 기간은 1년 내외로 한다.

56-2

청원자는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역사, 공동생활과 기도 생활의 기초, 성경 입문 등을 공부하며, 우리

51) 양성 I,4

52) 양성 II,11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에 따른 노동을 체험한다.

57. 청원자 담당은 청원자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갖추고 우리 수도회의 영성을 발견하며, 자신의 성소에 대하여 자유롭고,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⁵³⁾

청원기를 마칠 무렵, 총장 관구장은 청원자 담당의 의견과 총평의회 관구평의회⁵⁴⁾의 자문을 들어 청원자를 수련원에 받아들인다.⁵⁴⁾

57-1

청원자는 청원기가 끝날 때 식별 피정을 통하여 총장 관구장에게 수련자로 받아 줄 것을 자원으로 요청한다. 총장 관구장은 청원자의 의향과 인간적, 영적, 심리적 성숙도, 건강, 소비녀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수련자로 받아들일 것을 수락한다.⁵⁵⁾ 청원자는 청원 기간 중에 자기 성소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휴가를 한다. 청원자는 수련기가 시작되기 전에 만 8일 간의 피정을 한다.

53) 수양 44

54) 교회법전 641; 양성 II,14

55) 교회법전 642

수련기

58. 수련기는 수도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집중적인 양성 기간이다. 이 시기에 수련자는 수련장의 지도로 성가소비녀회의 수도 생활을 체험하며 하느님의 뜻과 수도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달아야 한다.⁵⁶⁾

수련자들은 성가소비녀회의 정신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소비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적합성을 식별하고, 수도자이며 동시에 소비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하여야 한다.⁵⁷⁾

58-1

수련기에 수련자들은 수도생활신학, 성경, 신학, 영성, 전례헌장, 교의 교육, 회헌과 회칙을 공부하고 영성생활의 지식을 더욱 깊게 하는 체험들을 한다.⁵⁸⁾

다음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교회법에 따라 수련원에 받아들일 수 없다.⁵⁹⁾

- 1)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
- 2) 혼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

56) 교회법전 650

57) 교회법전 646

58) 교회법전 652,2; 양성 II,15

59) 교회법전 643,1

3) 현재 다른 수도회에 속해 있거나 그 사실을 숨긴 자. 다만 교회법 제68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4) 남의 뜻에 따라 또는 장상의 강요로 입회한 자

59. 수련 기간은 2년이며, 첫 해 12개월은 법정 기간이다.⁶⁰⁾

1) 수련자는 법정 기간 동안, 총장이 총평의회 동의 아래 설립한 수련원에서 생활하여야 한다.⁶¹⁾

2) 개별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총장이 총평의회 동의를 얻어 허가할 때에, 수련자는 우리 수도회의 다른 분원에서, 수련장을 대신하도록 지명된 소비녀의 지도를 받으며 수련할 수도 있다.⁶²⁾

3) 총장 관구장은 수련자 그룹이 일정 기간 수련원 외의 다른 분원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⁶³⁾

4) 수련자가 법정 기간 동안 수련원 생활을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경우, 그 수련기는 무효이다. 15일 이상 떠나 있으면

60) 교회법전 648,1-3

61) 교회법전 647,1

62) 교회법전 647,2

63) 교회법전 647,3

보충하여야 한다.⁶⁴⁾

60. 법정 기간 동안 수련자는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하느님의 뜻을 찾고, 복음 삼덕을 통하여 봉헌된 삶을 배우며,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 역사, 설립자의 정신을 통하여 기뻐하는 소비녀의 자세를 익힌다.⁶⁵⁾

61. 법정 기간 이후 수련자는 우리 수도회의 적합한 사도직에 투신할 수 있도록 사도직 실습을 통하여, 관상과 사도적 활동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수련을 받는다.⁶⁶⁾ 수련자는 양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학업이나 임무에 종사할 수 없다.⁶⁷⁾ 수련자들은 설립자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이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세를 익히도록 노력한다.⁶⁸⁾

61-1

수련 첫해 12개월의 법정기를 마친 2년 수련자는 지정된 공동체에 머물면서 사도직 체험을 한다.⁶⁹⁾

1) 2년 수련기에는 겸손과 가난의 정신으로 사도직

64) 교회법전 649,1

65) 교회법전 652,2

66) 교회법전 648,2; 양성 I,5

67) 교회법전 652,5

68) 유언

69) 교회법전 648,2

실습과 생활 체험을 통하여 우리 수도회의 일원으로서 강생의 사도적 생활에 투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⁷⁰⁾

2) 2년 수련자는 첫서약을 하기 2개월 전에 수련원에서 서약을 위한 집중 수련을 받는다.

3) 2년 수련자는 첫서약을 위한 집중 수련 1개월 전에 수련장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총장 관구장에게 서약을 청원해야 한다.

62. 수련장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수련자들의 성소를 식별하고 확인하며, 수련자들이 수도회의 영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 동반과 개별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⁷¹⁾

63. 서약은 한 수련자가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수도생활의 의미를 명백히 인식하고, 삼대 서원의 의무와 수도생활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4. 수련기를 마칠 무렵, 총장 관구장은 수련장과 수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참작한 후, 총평의회 관구평의회 동의를 얻어 첫서약을 허락한다. 첫서약을 허락받지 못한 수련자는 수도회를 떠나야 한다. 만일 서

70) 양성 I,5

71) 교회법전 652,1; 봉헌 66

약을 허락하는 데 의문이 있다면, **총장 관구장은 총평의회 관구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시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⁷²⁾

64-1

첫서약을 하기 전에 만 8일 간의 피정으로 서약을 준비하며, 첫서약의 표지로 십자가를 받는다.

유기서약기

65. 유기서약기는 우리 수도회의 강생의 영성과 사도적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도록 양성을 보완하며 종신서약을 준비하는 기간이다.⁷³⁾

65-1

유기서약기는 첫서약 후 3~6년이다. 유기서약자는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에 적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유기서약자 담당의 동반을 받는다.⁷⁴⁾

65-2

유기서약의 유효 요건은 다음과 같다.⁷⁵⁾

1) 서약을 하려는 자는 적어도 만 22세 이상이라야

72) 교회법전 653,2

73) 교회법전 659,1-2

74) 교회법전 659,1-2

75) 교회법전 656

한다.

- 2) 수련기를 유효하게 완료하여야 한다.
- 3) 총장 관구장이 총평의회 관구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
- 4) 서약은 강요나 공포나 속임 없이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 5) 총장 관구장이나 그 대리자가 서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66. 유기서약기의 양성은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적, 사도적, 학문적이며 실제적이어야 한다.⁷⁶⁾ 이 양성 기간에는 양성에 방해되는 직책이나 직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⁷⁷⁾

66-1

유기서약기 동안 전문 지식의 연구는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도직의 요구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개인의 은사와 적성을 참작할 것이다.⁷⁸⁾ 전문 교육을 계속 받는 소비녀들은 종신서약을 하기 전에 최소한 1년은 사도직을 해야 한다.

67. 유기서약자 양성은 강생의 영성을 사는 소비녀

76) 교회법전 660,1

77) 교회법전 660,2

78) 수양 62

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소비녀 각자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상황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복음의 정신, 교회의 사명,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 그리고 시대의 징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문화와 감각을 키우며 사도직 활동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68. 유기서약자는 양성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과 일치룰 이루도록 기도 생활과 사도적 활동을 조화시키며, 삼대 서원 생활과 자기 인격을 함양하는 삶을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⁷⁹⁾

68-1

유기서약자는 분원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는 동안, 유기서약자 담당과 긴밀히 연락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나눈다.

69. 유기서약자 담당은 유기서약자가 봉헌 생활과 사도적 활동의 일치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우리 수도회의 강생의 영성을 자신의 소명 안에서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며, 종신서약을 준비하도록 돕는다.⁸⁰⁾

79) 수도 8; 수양 18

80) 수양 59

69-1

총장(관구장)은 유기서약자들이 종신서약 전에 적어도 두 곳의 분원 생활을 경험하도록 배려하며, 영적, 사도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동안 2년간의 신학 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총장(관구장)은 종신서약 후에라도 그러한 교육 기간을 갖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70. 유기서약자는 첫서약 후 매년 갱신한다. 유기서약자가 서면으로 서약 갱신을 청원하면, 총장(관구장)은 유기서약자와 함께 사는 공동체 책임자와 유기서약자 담당의 소견과 총평의회(관구평의회)의 자문을 들은 후 이를 받아들인다.⁸¹⁾ 매년 유기서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서약자는 자유로이 회에서 떠날 수 있다. 총평의회(관구평의회)의 자문을 들은 총장(관구장)은 정당한 사유로 서약 갱신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⁸²⁾ 서약 갱신은 성찬례 중에 총장(관구장)이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하며, 서약자가 서명한 서약문은 수도회 문서고에 보관한다.

70-1

유기서약자는 서약 갱신 2개월 전에 청원서를 제출

81) 교회법전 657,1; 양성 I,6

82) 교회법전 689,1

한다.⁸³⁾ 이 때 유기서약자와 함께 사는 분원 책임자는 소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견서는 서로 충분히 기도하고 대화한 후 형제애를 가지고 성의껏 작성해야 한다.

71. 유기서약기를 마치는 소비녀는 총장(관구장)에게 서면으로 종신서약 청원서를 제출한다. 총장(관구장)은 유기서약자 담당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회원들의 소견을 참고할 수 있다. 총장(관구장)은 총평의회(관구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총장에게 종신서약 승인 청원서를 보내며 총장은 총평의회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다.

종신서약을 허락받지 못한 유기서약자는 수도회를 떠나야 한다.⁸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장(관구장)은 유기 서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년을 넘기지 말 것이다.⁸⁵⁾

71-1

유기서약기를 마치는 소비녀는 종신서약을 위해 1년의 준비 기간을 가지며,⁸⁶⁾ 집중 수련 2개월 전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종신서약 전에 6개월이나 1년

83) 교회법전 657,1

84) 교회법전 657,1

85) 교회법전 657,2

86) 양성 I,9

간의 집중 수련을 받는다. 이 기간은 강생의 영성을 심화하고 설립자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는 시기이다.

71-2

유기서약기를 마치는 소비녀는 만 8일 간의 피정으로 종신서약을 준비한다.

종신서약

72. 종신서약은 하느님께 영원한 일치를 약속하며, 하느님 나라를 더욱 열망하는 가운데 일생을 하느님과 수도회에 봉헌하는 것이다. 종신서약은 성찬례 중에 우리 수도회의 합법적인 장상이나 그 대리자 앞에서 하며, 종신서약을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성가소비녀회의 회원이 된다.

종신서약을 한 소비녀는 일생 동안 세상과 교회 안에서 복음적 완덕과 강생의 영성과 사명을 증언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양성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73. 종신서약에 필요한 조건은 유기서약에 필요한 조건들 외에 다음과 같다⁸⁷⁾(참고: 성가의 빛 65-2).

- 1) 적어도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 2) 3~6년의 유기서약기를 보내야 한다.

87) 교회법전 658

73-1

종신서약을 한 소비녀는 예식 중에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표지로서 반지를 받는다. 종신서약자가 서명한 서약문은 수도회 문서고에 보관한다.

계속 양성

74. 계속 양성은 초기 양성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전 생애의 여정을 뜻한다. 계속 양성은 강생의 영성을 바탕으로 더욱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수련을 하도록 계획하고, 소비녀 각자의 심성과 인격에 맞는 영성적, 전문적, 사도적인 성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한다.⁸⁸⁾

75. 주님께 봉헌된 소비녀 각자는 계속 양성의 주체이다. 각 개인은 전 생애를 통해 영적, 학문적, 실제적 양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시대의 징표에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한다.⁸⁹⁾ 소비녀는 자신의 영적 쇄신을 위하여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며, 장상과 공동체 책임자들은 대화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다.⁹⁰⁾

88) 수양 68; 봉헌 71

89) 교회법전 661; 수양 67

90) 수도 18

76. 종신서약 후 정한 시기에 소임에서 떠나 수도생활을 쇠신할 수 있는 적절한 계속수련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계속수련자 담당은 계속수련자들이 성령께 열린 마음으로 서원 생활을 쇠신하며, 사도직 수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행한다.

76-1

~~소비녀들은 종신서약을 한 후 매 7년마다 2개월간의 계속 수련을 하며, 계속 수련은 3차까지만 한다. 계속 수련시기와 방법은 관구에서 정하여 실행한다.~~

76-2

종신서약을 한 어떤 소비녀가 영적 도움을 받아야 할 긴급하고 진정한 필요를 느낄 때, 총장(관구장)은 그 소비녀의 내적 상태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피정을 하거나 수련을 받도록 도와 줄 것이다.⁹¹⁾

77. 총장과 관구장은 연로하여 일선 사도직에서 물러난 소비녀들이 영적 삶의 완성을 추구하며 적합한 사도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배려를 할 것이다.⁹²⁾

91) 수양 70; 봉헌 70

양성 담당자와 협조자들

78. 총장은 총평의회와 관구장은 관구평의회와 함께 수도회의 정신에 맞는 소비녀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특히 각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 수도회에 애정을 가지고 모든 이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소비녀를 선정하여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신학, 성경과 수도생활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인간학적 상식을 갖추도록 배려해야 한다.

78-1

수도회(관구)의 양성 책임자는 총장(관구장)이며 성소 계발 단계부터 계속 양성에 이르기까지 양성 전반을 조정하고 촉진하며 양성 평의원의 도움을 받는다. 총장과(관구장)은 양성 담당자들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6년 이상 같은 단계의 양성 책임을 맡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

79. 양성 담당자들은 하느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영성적 지혜와 통찰력을 겸비해야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활동에 민감해야 하며, 설립자의 카리스마와 우리 수도회의 정신에 따른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기도와 사도적 사명의 균형을 이

92) 공동 68; 봉헌 70

루고 공동생활에 충실하며, 복음적 사랑과 열린 마음으로 소비녀들의 삶에 동반하여야 한다.⁹³⁾

양성 담당자들은 소비녀 개인이 받은 은사의 가치를 이해하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축성생활과 조화롭게 그 은사를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⁹⁴⁾

80. 각 단계의 양성 담당자들은 일관성 있는 양성을 위하여 총장(관구장)과 공동체 책임자들과 일치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⁹⁵⁾ 양성 담당자들은 자매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동반한다. 양성 초기의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는 양성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양성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80-1

청원자나 수련자 또는 유기서약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책임자는 양성 담당자와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며 양성기에 있는 소비녀들의 영적 성숙과 수도자다운 인격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81. 수련장은 수련 교육과정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

93) 양성 II,32; 수양 31

94) 봉헌 66

95) 수양 32

며, 수련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협조자를 두어 역할을 분담한다.⁹⁶⁾ 수련장은 수련담당자들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쇄신하고 수련자들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1-1

수련장은 종신서약 후 적어도 5년 이상 된 소비녀로서 연령은 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수련장은 덕망이 있고 우리 수도회의 정신대로 공동생활에 충실하며 기도와 사도적 사명감이 균형을 이룬 소비녀이어야 한다. 수련장은 총평의회 관구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 관구장이 임명한다. 수련장은 수련자들의 양성에 책임을 지고 첫서약을 준비시킨다.

81-2

수련장은 수련기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실무를 담당하며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는다.⁹⁷⁾ 이 협조자들은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역사, 성경, 전례헌장, 영성 지도, 상담 등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소비녀들로 구성된다. 수련장은 협조자들과 함께 수련자들의 성소를 식별하고 확인하며, 수련자들이 예

96) 교회법전 651,2; 수양 52

97) 교회법전 651,2

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⁹⁸⁾

82. 총장은 총평의회와 관구장은 관구평의회와 함께 양성을 받는 이들의 시대적, 문화적 특성을 폭넓게 수용하고 인도할 수 있는 소비녀들을 선정하여 양성 담당자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할 것이다. 총장과 관구장은 양성 담당자들이 자신의 양성과 쉼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생애의 완성

83. 우리는 누구나 축성생활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 오는 죽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채워 줄 것이다. 공동체는 임종의 순간에 있는 소비녀에게 마지막 봉헌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진실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느님께 충실한 소비녀를 거룩하고 흠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 주실 것이다.⁹⁹⁾

98) 교회법전 652,1; 수양 52

99) 에페 5,27

제7장 수도회의 운영

책임 소비녀가 천주대전세 잘 생각해서 동료 소비녀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에 잘 정하여야 됩니다. 작정한 다음에 각 소비녀들은 원망없이 순명해야 됩니다.¹⁰⁰⁾

84. 우리 수도회의 권위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둔다. 장상은 교회와 총회로부터 합법적 권위를 부여받으며 회원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공동 영성과 사명을 위해 헌신한다.

85. 우리 수도회의 조직과 관리는 교회법에 준하여 수도회 고유법과 그에 따른 운영 체계로 이루어지며 강생의 영성과 사명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행정, 조직, 회헌에 관한 법적 규정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수도회는 회원 개개인이 수도회 조직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이를 위해 개별 공동체 책임자들 역시 맡겨진 임무에 따라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관구는 회헌과 회칙에 준하여 그 시대의 문화와 요구에 맞는 관구 규정을 만들 수 있다.

100) 서간 81

86. 우리 수도회는 교회법과 고유법에 따라 총평의회와 함께 총장이 관리하는 관구, 지부, 총장 직속 분원에 입적된 회원들로 구성되며 총원, 관구, 지부, 지구, 분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87. 우리 수도회의 직책과 직무는 선출, 임명을 통하여 부여된다. 선출일 경우 법적인 확인(성가의 빛 97-1)이 요구되고, 임명할 경우 고유법에 따라 총장이 총평의회, 관구장이 관구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¹⁰¹⁾

88. 총장과 관구장은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 설립자의 가르침, 회헌과 회칙 그리고 그 밖의 우리 수도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¹⁰²⁾ 회원 각자가 맡은 직무를 다하도록 도우며, 우리 수도회의 설립 목적을 실현한다.

89. 총장과 관구장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설립자의 영적 유산에 충실함으로써 섬김의 자세로 수도회를 관리하며, 모든 회원들은 자발적인 순명으로 이에 협조한다. 총장과 관구장은 회원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과 사도적

101) 교회법전 625,3

102) 교회법전 617

삶을 쇄신하는데 주력한다.

89-1

우리 수도회의 최상권은 교황과 서울대교구장에게 있으므로 모든 소비녀는 그들에게 협력할 의무가 있다.¹⁰³⁾ 또한 관구와 분원에서는 관할 교구장에게 협력할 의무가 있다.¹⁰⁴⁾

90. 관구장, 지부장은 총장에게 소속되어 교회법과 수도회 회헌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권위를 행사한다. 각 개인의 은사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수도회와 교회의 사명을 위해 회원들을 촉진한다.

91. 성가소비녀회의 최고 권한은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총회에 있고,¹⁰⁵⁾ 통상적으로는 총장이 총평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권한을 행사한다. 총장과 총평의원들은 회원들이 영성과 사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회에 봉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03) 교회법전 594·601

104) 교회법전 590

105) 교회법전 631,1

수도회 총회

92. 총회는 우리 수도회 전체를 대표하며, 강생하신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형제적 친교와 일치룰 이루는 표지이다. 우리가 성령께 귀 기울이며, 설립 정신과 수도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새롭게 성장하도록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을 쇄신하기 위한 회의이다.¹⁰⁶⁾ 총회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복음에 비추어 식별하고 시대의 요구에 따른 적응과 쇄신을 촉진하며, 모든 회원이 합심과 친교로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자리이다. 소비녀들은 총회에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¹⁰⁷⁾

93. 총회의 주요 기능¹⁰⁸⁾

- 1) 우리 수도회의 영적 자산인 영성과 사명, 설립 정신, 고유한 전통의 보존, 쇄신, 촉진
- 2) 수도생활 전반에 관한 점검, 평가, 계획
- 3) 회헌과 회칙 제정, 개정
- 4)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공동 합의, 결의
- 5) 관구와 지부의 설립, 분할, 통합, 폐쇄, 경계 변경¹⁰⁹⁾

106) 교회법전 578; 631,1

107) 교회법전 631,3

108) 교회법전 578; 631,1

109) 교회법전 581· 585

- 6) 각 관구의 총원 기금 분담액 결정
- 7) 총장이 총평의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결정
- 8) 총장과 총평의원 선출

94. 총회의 소집¹¹⁰⁾

- 1) 총회는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 개최한다.
- 2) 총장은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관구장들의 자문을 들은 후 총평의회 동의를 얻어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전체 서약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총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총평의회는 임시 총회의 소집 범위, 개최 시기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3) 총장의 사망, 사임 또는 해임 때에 수석 총평의원은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임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 총장의 공석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선출되는 총장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 총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수석 총평의원이 총장직을 승계한다.
- 4)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6개월 전에 총장은 총회

110) 교회법전 631,2

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전 회원들에게 서신으로
통보하며, 회원들은 총회를 위한 기도를 한다. 정
기 총회는 중대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
회 개최시기를 기점으로 3개월을 앞당기거나 연
기할 수는 있으나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 총장은 총회의 합법적인 의장이다. 단, 선거회의
인 경우, 총장과 총평의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나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없다.

95. 총회의 구성¹¹¹⁾

총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성된
다.

- 1) 당연직 대의원 : 총장, 총평의원, 총사무담당,
총재정담당, 관구장, 지부장, 수련장
- 2) 선출 대의원 : 관구, 지부에서 선출된 소비녀들
로 그 수는 당연직 대의원 수보다 많아야 한다.
대의원 선출은 총회가 열리기 6개월 전에 시행한
다.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권은 모든 서약자
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종신서약자에게 있다.
- 3) 대의원과 총회준비진행위원의 임무는 총회의 종
료와 함께 끝난다.

111) 교회법전 631,2

95-1 총회 대의원

- 1) 대의원은 각 관구에서 서약자 수의 1/15를 선출한다.
관구에서는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기표지를 밀봉하여 총장에게 발송하며, 총장은 총평의회와 함께 이를 개봉한다.
- 2) 총회의 소집이 통보된 후 당연직 대의원을 그 직책에서 해임할 수 없으며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만일 참석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 3) 선출된 대의원이 정당하고 타당한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총장은 총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리고 차점자로 대체한다.
- 4) 총장은 선출된 대의원들과 예외적으로 참석할 회원들의 명단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5) 총회에서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 총장이나 총평의원으로 선출되면 그는 가능한 한 속히 총회에 참석해야 하고 선출 자체로서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 6) 임시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들은 정기 총회와

동일한 선거 절차에 따라 새로 선출된다.

95-2 수도권 총회준비진행위원회

- 1) 총장, 총평의원과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필요하다면 총회 서기를 임명한다. 이 서기는 대의원이 아닐 수도 있다.
- 2) 총회 준비와 총회대의원 선출, 총장 후보 선출, 총회 개회에서 폐회까지 총회 전반에 관한 진행과 사무를 담당한다.
- 3) 총회준비는 1년 전에 시작하며 총회를 소집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총회 준비일정을 기획한다.
- 4) 모든 회원들이 총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방법을 모색한다.
- 5) 전 회원의 의견과 관구에서 제출한 총회주제에 대한 연구와 관구, 지부의 제안 등을 토대로 의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의안에 따라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총회대의원들에게 배부한다.
- 6)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을 관구에 의뢰한다.
- 7) 총장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자의 이름, 수도권, 생년월일, 소속관구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투표용지와 함께 모든 유권자에게 보낸다.

8)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고 총회 보고서를 작성한다.

96. 총회의 진행¹¹²⁾

총회는 성령 강림을 청원하는 개회 미사로 시작되며 회헌과 회칙에 따라 보고회의, 의결회의, 선거회의 순으로 진행되며 폐회선언으로 마친다.

96-1 보고 회의

- 1) 총장은 관구의 보고를 받아 4년간의 수도회 운영, 인원 현황, 회원들의 영적, 수도적, 사도적 생활과 양성, 면학, 청빈에 관하여 총평의회에서 승인하고 서명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또한 총재정담당이 작성한 수도회의 재정 관리 상황에 관하여 총평의회가 서명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 2) 총원 행정 감사를 위해 감사 위원 2명을 선출하여 감사를 의뢰하고 선거회의 전에 감사 결과 보고를 받는다. 감사 위원 선출은 대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수로 결정하며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자가 감사 위원이 되며 임무는 총회의 종료와 함께 끝난다.

112) 교회법전 631,2

96-2 의결 회의¹¹³⁾

- 1) 총회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의한다.
- 2) 회헌 개정은 참석한 대의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칙 개정과 그 밖의 의안은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3) 안건은 절대다수로 결의되며 두 번의 투표 후에도 찬반 동점일 때는 총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 4) 안건은 공개 투표 또는 거수로 결의한다. 안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 출석 대의원들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는 비밀 투표로 결의할 수 있다.
- 5)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기 총평의회 또는 확대총평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안한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장이 전 회원에게 선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고, 차기 총회까지 유효하며, 차기 총회에서 변경, 폐지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다.

96-3 선거 회의¹¹⁴⁾

- 1) 총선거 전에 선거관리 위원장, 선거관리 위원 2명과 서기 2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

113) 교회법전 631,2

114) 교회법전 631,2

성한다. 선출된 소비녀들은 총선거 진행 중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과 총회가 끝난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선서한다.

- 2) 선출된 선거관리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3) 대의원은 선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¹¹⁵⁾
- 4) 총선거를 시작하는 전 날에 유권자들은 성체 현시를 하고 피정을 한다.
- 5) 총선거가 시작되는 날 선거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하느님의 강복과 성령의 빛을 청원하는 미사를 드린다.
- 6) 각 선거마다 유권자들은 한 표의 선거권만 가진다.¹¹⁶⁾ 선거가 유효하려면 투표가 자유로워야 하므로, 어떤 유권자가 직접 간접의 억압이나 위협을 받아 투표하면 그 선거는 무효이다. 투표는 비밀로 하고 정확해야 하며, 선거 전이나 후에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 없다.¹¹⁷⁾
- 7) 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비밀 투표를 순서대로 잘 하는지 감시한다.

115) 교회법전 626

116) 교회법전 168

117) 교회법전 172

8)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 위원회가 관례대로 개봉하며, 투표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으면 그 선거는 무효이다. 118) 선거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모두 소각한다.

9) 서기는 투표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선거관리 위원장과 선거관리 위원들, 그리고 서기 자신이 서명 날인한 후 수도권 문서고에 보관한다. 119)

97. 총장 선출¹²⁰⁾

- 1) 총장의 피선 자격은 종신서약 후 적어도 5년 이상 된 소비녀로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 2) 총장은 직간선제로 선출한다. 총장 후보자 선출은 종신 서약자 전원이 서신으로 하며 1회의 투표권을 가진다. 개표에서 절대 다수의 득점자가 없으면 최다 득점자 3명을 후보로 하며 총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
- 3) 임기는 4년이며 재임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삼선을 불가하다.
- 4) 총장은 임기가 만료된 해의 선거에서 관구장, 총

118) 교회법전 173,2·3

119) 교회법전 173,4

120) 교회법전 625,1

평의원, 관구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5) 관할 주교가 주재한다.

97-1

- 1) 개표는 선거회의에서 서울 대교구장 또는 그 대리자의 주재 아래 진행된다.
- 2) 개표 결과 절대 다수의 득점자가 있으면 서울 대교구장 또는 그 대리자의 확인으로 당선이 확정된다.
- 3) 개표에서 절대 다수의 득점자가 없으면, 2차에서는 1차의 최다 득점자 3명만이 피선거권을 가지며, 그 이름을 서약 순으로 발표한다. 2차까지 절대 다수의 득점자가 없으면, 3차에서는 2차의 최다 득점자 2명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때 두 후보는 선거권이 없다. 3차에서는 상대 다수표로 선출된다. 만일 두 사람이 동점이면, 첫서약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서약을 동시에 하였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
- 4) 새로 선출된 총장이 직무를 수락하면 서울 대교구장 또는 그 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 5) 선출된 소비녀는 극히 중대한 이유가 아니면 총장직을 거부할 수 없다. 서울 대교구장 또는 그 대리자는 확인과 동시에 총장이 선출되었음을 선

언한다.

- 6) 선언이 끝나면 새 총장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소비녀들 앞에서 약속하고 소비녀들은 순명을 약속하는 서약 갱신문을 낭독한다.
- 7) 선출된 총장은 일정기간 여유를 가진 후 직무에 임한다.

98. 총평의원 선출¹²¹⁾

- 1) 총평의원의 피선 자격은 종신서약 후 적어도 5년 이상 된 소비녀로 연령은 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¹²²⁾
- 2) 임기는 4년이며 재선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삼선을 불가하다.¹²³⁾

98-1

- 1) 총평의원의 선출은 새로 선출된 총장이 주관한다.
- 2) 총평의원은 한 사람씩 따로 선출한다. 후보자 선출은 총회 대의원이 하며, 방법은 성가의 빛 97-1의 (3)항에 따른다. 첫 번째 선출된 총평의원이 수석 총평의원이 된다.

121) 교회법전 625,3

122) 교회법전 623

123) 교회법전 624,1· 2

총원

99. 총원은 총장이 거주하는 곳이며 총평의원, 총사무담당, 총재정담당, 그 밖의 우리 수도회의 봉사자를 위하여 총원에서 거주하는 소비녀들로 구성된다. 총원은 수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한다.

100. 총장과 총평의회역의 역할

1)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을 심화시키기 위해 모든 소비녀들의 자발성을 촉진하고 교회와 시대의 필요에 적응함으로써 우리 수도회의 쇄신과 발전을 도모한다.

2) 우리 수도회의 일치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하여 관구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3) 회헌과 회칙, 총회 결정 사항들이 각 관구에서 실행되도록 한다.

4) 양성과 사도직에 관한 계획과 촉진 역할을 한다.

총장

101. 총장은 우리 수도회를 대표하며 교회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복음의 정신과 섬김의 자세로 행사하고, 소비녀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¹²⁴⁾ 총장은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

을 이행하고 수도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지닌 소비녀이어야 한다.

- 1) 총장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것은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 설립자의 정신과 수도회 회헌이다.
- 2) 총장은 소비녀들의 봉사자로서 공동선을 위하여 총평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회헌에 따라 수도회 전체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설립자의 정신과 회헌, 회칙에 충실하도록 돕는다.¹²⁵⁾

101-1

총장은 회헌과 회칙의 준수에서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회 총장들의 국내외 연합회에 협력의 정신으로 참여하며 연대해 나간다.

102. 총장은 총평의원들과의 유대를 통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수도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임기 동안 실현해야 할 목표를 관구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

103. 총장은 회헌과 회칙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관면을 줄 수도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124) 교회법전 629; 618

125) 교회법전 622

한 개인이나, 한 분원을 어떤 조항에서 일정한 기간 면제해 줄 수 있다. 한 분원에 어떤 조항을 면제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모든 회원들에게 알릴 것이다.

104. 총장이 관구를 방문할 때 소비녀들은 총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총장은 소비녀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자발적 순명을 장려한다. 총장은 소비녀들의 협력을 촉진하며,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¹²⁶⁾

104-1

총장은 임기 중 적어도 1회 직접 또는 대리자를 통하여 관구를 방문한다. 방문 시 회원들이 수도회 정신과 회헌 회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적절한 조언으로 동반할 것이다.

105. 총장의 공석 또는 유교시, 수석 총평의원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지만 만일 수석 총평의원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서원 순에 따른 총평의원이 이를 대행한다. 그러나 행정 지침을 변경시킬 수 없고, 총장의 뜻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¹²⁷⁾

126) 교회법전 628,1. 3

106. 총장이 중대한 사유로 사임해야 할 경우 이를 총평의회에 알린 후 서울 대교구장의 확인을 받는다. 그러나 해임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석총평의원이 확대총평의회를 소집하여 검토한 후 결의된 사유서를 작성하여 서울 대교구장의 확인을 받는다.¹²⁸⁾

총평의회

107. 총평의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우리 수도회의 자문기구이다. 총평의회는 총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명 이상의 총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총장을 제외한 총평의회는 총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교회법과 회헌에 따라 총장의 직무에 관하여 조언하고 동의하거나 협조한다.¹²⁹⁾

총평의회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며 필요시에 총장이 언제나 소집할 수 있다. 총평의회는 과반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유효하며, 안건의 내용에 따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총장은 관련된 회원들을 총평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107-1

총장이 공석이거나 유고일 때에는 수석 총평의원이

127) 교회법전 131·620

128) 교회법전 624,3

129) 교회법전 596·627

소집한다.

총평의회에서는 안건의 성질에 따라 비밀 투표 또는 거수 등으로 결의한다. 총평의원들은 결의된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 총장과 공동 책임을 지며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총평의원

108. 총평의원들은 자신의 일차적인 임무를 방해하는 다른 직무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총평의원들은 총장이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기간 장상의 대리자로서 관구를 방문 할 수 있다.¹³⁰⁾ 그럴 경우 총장에게 상세하고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한다.

108-1

- 1) 총평의원은 총장의 협력자로서 교회법이나 회헌에 따른 수도회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리고 영성과 사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 2) 총평의원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징표에 따른 수도생활의 동향을 주시하고 연구함으로써 총장의 직무수행을 돕는다.
- 3) 총평의원은 수도회의 선익을 위해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과 은사에 충실하고, 회헌과 총회로부터

130) 교회법전 628,1

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4) 총평의원은 수석 총평의원과 총사무담당을 제외하고 총장 직속의 다른 공동체에 있을 수 있다.

109. 총평의원의 사임을 받아들이거나 해임할 경우, 총장은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총평의원이 공석이 될 경우, 총장은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3개월 이내에 (97조 1항) 선출하여 차기 총회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한다. 선출 방법은 총평의회에서 결정한다.

확대 총평의회¹³¹⁾

110. 총장은 총평의원들, 관구장들과 함께 확대 총평의회를 구성한다. 필요시 관구평의원들을 참석시킬 수 있다.

110-1

- 1)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한다.
- 2) 연 1회 정기 회의를 하며 총장은 필요시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총장이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또한 총평의회와 관구장이 요청할 때 소집할 수도 있다.
- 3) 교회법과 회헌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131) 교회법전 633

우리 수도회의 일치와 선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 4) 관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을 토론하고 차기 총회까지 연기될 수 없는 안건들에 대한 임시적 결정을 내린다.
- 5) 새로운 관구와 지부의 설립, 분할, 통합, 폐쇄 또는 그 경계 변경에 대한 청원, 임시 총회 요청, 총회의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한 안건들을 다룬다.

111. 총장이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중대한 사항들¹³²⁾

- 1) 관구장, 관구평의원들의 선출 추진
- 2) 총평의원, 관구장, 관구평의원의 사임, 해임 인준
- 3) 총사무담당, 총재정담당, 지부장, 지부평의원, 수련장, 양성담당, 총원 책임자, 총원 소속 분원 책임자의 임명과 해임
- 4) 청원자를 수련원으로 받아들임
- 5) 첫 서약 허락
- 6) 종신서약 승인
- 7) 종신서약자의 다른 수도회 전속 허가¹³³⁾
- 8) 종신서약자가 1년이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일정

132) 교회법전 627,2

133) 교회법전 684,1

기간 공동체를 떠나 있도록 허락¹³⁴⁾

9) 회원의 퇴회와 재입회, 제명¹³⁵⁾

10) 관구 규정, 주요 지침의 제정, 변경, 개정과 주요 결정사항 승인

11) 수도회의 재산의 취득, 소유, 관리, 양도, 대차,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의 개축 허가 등 재정에 관련된 사항¹³⁶⁾

12) 회원 개인명의 소유에 대한 유언서 작성과 양도 변경 사항에 대한 허가

13) 수련원 설립, 이전, 폐쇄¹³⁷⁾

14) 관구본원, 총원직속 지부본원 이전

15) 지부의 본원의 설립, 폐쇄 승인

16) 임시 총회 소집

17) 총장 거주지의 영구 이전

18) 총회에 제출할 안건들

총사무담당

112. 총사무담당은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하며, 총평의원들 중에서 임명될 수 있다.

134) 교회법전 686,1

135) 교회법전 688,2; 690; 699,1

136) 교회법전 638,3

137) 교회법전 647,1

112-1

- 1) 종신서약자로 만 30세 이상이고 겸손하며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회원이어야 한다.
- 2) 수석총평의원을 제외한 총평의원 중에서 총사무담당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총평의원이 아닌 회원이 임명될 때는 투표권은 없다.
- 3) 수도회의 서기로서 모든 공문서를 취급하고, 총평의회·확대총평의회 회의록, 연혁, 역사 등을 기록 관리한다.
- 4) 총원, 관구, 지부에 관계된 주요 문서, 자료 등을 정리 보존한다.
- 5) 총사무담당은 사도좌에서 발행되는 문헌, 교회법, 지역 교회에서 발행되는 공문서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정확한 내용을 총장과 총평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6) 수도회의 문서고를 관리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문서 등을 아무에게나 보여 주거나 줄 수 없으며,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총재정담당¹³⁸⁾

113. 총재정담당은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하며, 총평의원들 중에서 임명될 수 없다.

138) 교회법전 636

113-1

- 1) 종신서약자로 만 30세 이상이고 판단력과 책임감이 있으며, 인내와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신앙이 견고한 회원이어야 한다.
- 2) 총평의회와 총장의 감독을 받으며 회헌과 교회법, 국법에 따라 우리 수도회 전체의 재정을 관리한다.¹³⁹⁾
- 3) 재정담당은 재정적 투자가 예상되는 양성과 사도적 계획, 재정 보증을 요청하는 일, 자산 증감 사항을 다룰 때 평의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 4) 총평의회에 6개월마다 결산 보고를 하고 연말에는 관구의 결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며 수도회 전체의 예산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 5) 관구와 지부, 총장 직속분원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수도회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총장과 총평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수도회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한다.¹⁴⁰⁾
- 6) 동산, 부동산 그리고 증여에 관한 목록을 늘 보완하여 유지한다.
- 7) 총회에 제출할 수도회 재정보고서를 준비한다.

139) 교회법전 636,1

140) 교회법전 1284

- 8) 사전에 관할권자의 권한을 서면으로 얻지 않는 한, 재정담당이 통상적 관리 범위와 방법을 벗어난 행위는 무효이다.¹⁴¹⁾

수도회 재정의 총관리

114. 우리 수도회는 법인으로서 총원, 관구, 지부차원에서 재산을 취득, 소유, 관리, 양도할 수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회헌, 교회법, 국법에 준한다.¹⁴²⁾

- 1) 소비녀들은 세상의 자원이 보다 의롭게 분배되어 모든 창조물이 서로 상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느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수도회와 관구 모든 차원에서 재원을 나눈다.
- 2) 총장과 관구장, 모든 재정 담당들, 그리고 각 분원의 책임자들은 관구나 각 공동체의 모든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신중하게 하고, 재산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조정할 것이다.¹⁴³⁾
- 3) 성가소비녀회의 회원은 다른 법인체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4) 총원, 관구, 지부는 교회법과 회헌의 규정에 따라

141) 교회법전 1281,1

142) 교회법전 634,1; 635

143) 교회법전 1276,1

회원의 양성과 생계 그리고 사도직의 실현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 소유, 관리, 양도하는 법적 권리를 지닌다.

5) 총장은 위임권을 지닌 우리 수도회의 법적 대표자이다. 총장은 총평의회 동의 얻어 다른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관구, 지부가 법인인 곳에서는 관구장, 지부장이 법적 대표자가 된다.

114-1

장상은 재정담당 수녀들에 대한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담당 수녀들의 전문적인 능력, 관리에 있어서의 정직성, 투명성, 가난 정신, 정의감을 지니도록 관리 감독한다. 가능한 한 모든 예금에 대해서 재정담당을 제외한 2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 총평의회와 총장의 감독 아래 총재정담당은 금전, 물질 등을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공동선을 지향하며 사랑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한다.¹⁴⁴⁾

2) 수도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 관구에서는 총원에

144) 교회법전 635,2

기금을 납부하며, 가난한 관구는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특별 기부금을 총원에 보낼 수 있다.

- 3) 총장은 총평의회와 동의를 얻어 교회법과 회헌에 따라 재산의 매매, 양도, 대차 등을 할 수 있다.¹⁴⁵⁾
- 4) 우리의 영성에 따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
- 5) 모든 재산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해당 재단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다. 불가피할 경우 장상의 승인을 받아 달리 처리할 수 있다.
- 6) 총원과 관구의 재정담당은 재산증식에 있어 어떠한 형태이든 투기성 투자는 하지 않는다.
- 7) 조건을 전제한 기부는 받지 않는다.

총원 책임자

115. 총원 책임자는 총원에 거주하는 서약자들 중에서 총장에게 직속되지 않는 회원들을 책임지고 돌보며, 총원의 살림 일체를 맡는다.

115-1

- 1) 총장과 거주지가 같을 경우 그 책임 한계를 분

145) 교회법전 634,1; 635,1

명히 한다. 146)

- 2) 총원의 의식주에 관한 책임은 총원 책임자에게 있으며, 총장은 총원의 생활에 관계되는 일일 경우 사전에 총원 책임자와 의논한다.

관구

116. 관구는 지리적으로 구분된 지역 안에서 관구장의 지도 아래 공동생활, 기도 생활, 사도적 활동을 하는 우리 수도회의 구성단위이다. 관구는 교회법과 수도회 고유법에 따라 운영되며, 관구장은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관구평의회와 함께 관구를 관리한다.

117. 관구의 설립, 분할, 통합, 폐쇄

- 1) 우리의 영성과 사명을 실행하면서, 교회와 인류에 봉사하며 공동체의 친교와 일치를 증진하고, 사도직의 활성화, 성소 증가, 나아가 미래의 발전이 예견될 때, 총장이 총평의회와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구 설립을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 2) 관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성과 행정,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야 하며 서약자 수가 4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3) 관구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총장은 총평의회와 동

146) 교회법전 636

의를 얻어 관구 간의 통합 또는 폐쇄를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관구 폐쇄 시 재산 처리는 총장이 총평의회와 함께 결정한다.¹⁴⁷⁾

관구총회

118. 관구총회는 관구 회원들의 일치를 도모하며 관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복음과 설립은사에 따라 수도권 총회의 결정과 방향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⁴⁸⁾ 모든 관구 회원은 관구 총회에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¹⁴⁹⁾ 관구총회는 관구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나 총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구규정은 회헌과 회칙을 따라야 하고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을 이어나가야 한다.

119. 관구총회는 관구 공동체의 반성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로서 수도권 총회에 제안될 주제들을 연구한다. 관구총회의 결정사항들은 총장과 총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119-1

관구총회는 수도권 총회 전 후로 개최한다.

147) 교회법전 616

148) 교회법전 631,1

149) 교회법전 631,3

1) 수도권 총회 전 관구총회

수도회 총회 전 관구총회는 관구장이 관구 평의회
의 동의를 얻어 회의 개최 적어도 3개월 전에 소
집 공고한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난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검토한다.
- ② 관구 전체의 생활(회원현황, 영적생활, 양성,
사도직, 재정 현황 등)을 지침에 따라 반성, 평
가하고 관구의 생활과 사명을 보다 활기 있게 하
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 ③ 수도권 총회에서 검토할 자료를 준비하며, 제안
사항을 선정한다.

2) 수도권 총회 후 관구총회

수도회 총회 후 관구총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수도권 총회에서 결정된 의안에 따라 실천할 구
체적인 방안을 세우며, 관구총회의 결정사항을
총평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관구장이 회
원들에게 통보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② 관구장과 관구평의원을 선출한다.
- ③ 관구 총회 결정 사항은 차기 관구 총회까지 유
효하며 차기 관구 총회에서 변경, 폐지되지 않으
면 계속 유효하다.

120. 관구 총회의 주요 기능¹⁵⁰⁾

- 1)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에 따른 관구의 사도적 방향 설정, 쇄신, 촉진
- 2) 전 총회(수도회, 관구)의 결정 사항 실행 검토
- 3) 수도생활과 양성에 관한 점검, 평가, 계획
- 4) 관구 규정 제정, 변경, 개정
- 5) 회원들과 공동체에서 상정한 의제들에 대한 공동 합의, 결의
- 6) 관구의 재정 상태 검토
- 8) 관구장이 관구평의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결정
- 7) 관구장과 관구평의원 선출

121. 관구 총회의 소집¹⁵¹⁾

- 1) 관구 총회는 관구의 모든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 개최한다.
- 2) 관구장은 총평의회가 요청하거나, 관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구평의회 동의를 얻어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관구장은 전체 서약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관구평의회는 임시 총회의 소집 범

150) 교회법전 578; 631,1

151) 교회법전 631,2

위, 개최 시기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3) 관구장의 사망, 사임 또는 해임 때에 수석 관구평의원은 총평의회의 허락을 받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임시 관구 총회를 열어야 한다. 관구장의 공석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때 선출되는 관구장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 관구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수석 관구평의원이 관구장직을 승계한다.
- 4) 관구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3개월 전에 관구장은 관구 총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관구의 모든 회원들에게 서신으로 통보하며, 회원들은 관구 총회를 위한 기도를 한다. 총회는 중대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회 개최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는 있으나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 관구장은 관구 총회의 합법적인 의장이다. 단, 선거회의인 경우, 관구장과 관구평의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이나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총장이 나 총장의 대리자가 주재한다.

122. 관구 총회의 구성¹⁵²⁾

관구 총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52) 교회법전 631,2

- 1) 당연직 대의원: 관구장, 관구평의원, 관구사무담당, 관구재정담당, 관구 총회 준비진행 위원, 수련장, 유기서약자 담당
- 2) 선출 대의원: 관구에서 선출된 소비녀들로 그 수는 당연직 대의원 수보다 많아야 한다. 대의원 선출은 관구 총회가 열리기 3개월 전에 시행한다. 관구 총회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권은 모든 서약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종신서약자에게 있다.
- 3) 대의원과 관구 총회 준비진행 위원의 임무는 관구 총회의 종료와 함께 끝난다.

122-1 관구총회대의원

- 1) 관구총회대의원은 서약자 수의 1/8을 선출한다.
- 2) 관구 총회의 소집이 통보된 후 당연직 대의원을 그 직책에서 해임할 수 없으며 관구총회대의원은 관구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만일 참석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구 총회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 3) 관구 총회에서 대의원이 아닌 소비녀가 관구장이나 관구평의원으로 선출되면 그는 가능한 속히 관구 총회에 참석해야 하며 선출자체로서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4) 임시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들은 정기 총회와 동일한 선거 절차에 따라 새로 선출된다.

122-2 관구총회준비진행위원회

- 1) 관구장, 관구평의원과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구장이 위원장이 된다.
- 2) 관구 총회 준비와 관구총회대의원 선출, 수도권 총회 전·후 관구 총회 개회에서 폐회까지 총회 전반에 관한 진행과 사무를 담당한다.
- 3) 관구의 모든 공동체와 소비녀들이 관구 총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방법을 모색한다.
- 4) 수도권 총회 전 관구총회는 소집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구 총회에서 다룰 안건을 제출한다.
- 5) 관구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도권 총회준비진행위원회로 보낸다.

123. 관구총회의 진행

수도회 총회를 전·후하여 열리며 수도권 총회와 같은 방법으로 소집되고 진행된다.

124. 관구장 선출

- 1) 관구장의 피선 자격은 종신서약 후 적어도 5년 이

- 상 된 소비녀로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 2) 관구장은 직선제로 선출한다.
- 3) 임기는 4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 4) 관구장은 임기가 만료된 해의 선거에서 관구평의
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5) 총장이 주재한다.

124-1

선거회의 전에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2명과
서기 2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1) 관구장 선출은 관구 종신서약자 전원이 투표권
을 가지며 선거회의는 종신서약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2) 개표는 관구 선거회의에서 총장 또는 그 대리자
의 주재 아래 진행된다.
관구장 선출방법은 성가의 빛 97-1의 (3)항을 따
른다.
- 3) 총장 또는 그 대리자는 선출된 관구장의 직무
수락을 확인한다. 선출된 관구장은 극히 중대한
일이 아니면 관구장직을 거부할 수 없다.
- 4) 선출된 관구장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소
비녀들 앞에서 약속하고, 소비녀들은 서약 갱신
문을 낭독한다.

- 5) 선거회의 후에 총장은 총평의회를 소집하여 새로 선출된 관구장의 추인에 관한 의견을 듣고 8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새로 선출된 관구장에게 통보한다.¹⁵³⁾
- 6) 새로 선출된 관구장은 직무에 관한 권한을 갖지만 추인의 통보를 받기 전에는 그에 따른 어떤 법적효과를 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추인을 통보받기 전에 어떤 법률행위를 했다면 모두 무효이다.
- 7) 선출된 관구장은 총장으로부터 추인 통보를 받은 후 직무에 임한다.

125. 관구평의원 선출

- 1) 관구평의원의 피선 자격은 종신서약 후 적어도 5년 이상 된 소비녀로 연령은 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¹⁵⁴⁾
- 2) 임기는 4년이며 재선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삼선은 불가하다.¹⁵⁵⁾

125-1

- 1) 관구평의원 선출은 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주관

153) 교회법전 625,3

154) 교회법전 623

155) 교회법전 624,1·2

한다.

- 2) 선출은 관구총회 대의원이 하며 총평의원 선출 방법에 준한다.(참고. 성가의 및 98-1), 첫 번째 선출된 관구평의원이 수석 평의원이 된다.
- 3) 선거회의 후에 총장은 총평의회를 소집하여 새로 선출된 관구평의원들의 추인에 관한 의견을 듣고 8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새로 선출된 관구평의원들에게 통보한다.
- 4) 선출된 관구평의원들은 총장의 추인 통보를 받은 후 직무에 임한다.

관구 본원

126. 관구 본원은 관구장이 거주하는 곳이며 관구평의원, 관구사무담당, 관구재정담당, 그밖에 관구 차원의 봉사를 위하여 거주하는 소비녀들로 구성된다.

127. 관구장과 관구평의회의 역할

관구장과 평의회는 회헌과 회칙, 수도회 총회와 관구 총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식별하며, 실행하고 평가한다.

관구장

128. 관구장은 총장으로부터 관구의 관할을 위탁받은

상급장상이다. 그러므로 총장과 일치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회헌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구 내 모든 회원, 분원, 사도직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관구장은 교회의 가르침과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에 따라 섬김의 자세로 관구를 이끌어 간다.¹⁵⁶⁾

시대의 징표를 읽고 세상과 교회에 더욱 잘 봉사하기 위해 관구평의회와 더불어 끊임없이 사도직을 식별하고 연구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회원들의 영적, 사도적 생활에 활기를 주고,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성소를 실현하도록 촉진한다. 관구 장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해 기도와 신뢰 안에서 회원들과 대화한다.

총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관구의 영적, 사도적 상황과 재정 상태를 총장에게 1년에 한 번 보고한다.

128-1

관구를 대표하는 관구장은

- 1) 수도회 총회와 관구 총회의 결정 사항들을 실행한다.
- 2) 관구총회, 관구평의회, 관구자문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 3) 소비녀들 간에 일치를 촉진하고 소비녀들의 영

156) 교회법전 618

적, 인간적 성숙을 돕는다.

- 4) 분원 책임자들의 권한을 존중하며 그들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 5) 소비녀들을 사도직에 파견한다
- 6) 국내 장상연합회 등 대외 활동에 참여한다.
- 7) 관구장은 임기 중 적어도 1회 직접 또는 대리자를 통하여 분원을 방문한다.
- 8) 관구 설립 시에 초대 관구장은 총장이 총평의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29. 관구장의 부재 시 수석 관구평의원이 관구장의 직무를 대행하지만 만일 수석 관구평의원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서원 순에 따른 관구평의원이 이를 대행한다.¹⁵⁷⁾ 그러나 행정 지침을 변경시킬 수 없고 관구장의 뜻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130. 관구장이 중대한 사유로 사임해야 할 경우 이를 관구평의회에 알린 뒤 총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해임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석관구평의원은 관구평의회와 함께 총평의회에 사유서를 제출한다.¹⁵⁸⁾ 관구장의 사임, 해임은 총장이 총평의회

157) 교회법전 131·620

158) 교회법전 624,3

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다.

관구평의회

131. 관구평의회는 관구장과 관구 총회에서 선출된 3명 이상의 관구평의원들로 구성된다. 관구장을 제외한 관구평의회는 관구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교회법과 회헌에 따라 관구장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조언하고 동의하거나 협조한다.¹⁵⁹⁾

관구평의회는 적어도 1개월에 한 번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하며 필요시에 관구장이 언제나 소집할 수 있다. 관구평의회는 관구평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유효하다. 관구평의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다른 소비녀들을 관구평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131-1

관구평의회는 관구장이 소집하며, 관구장이 공석이거나 유고일 때에는 수석 관구평의원이 소집한다.

관구평의회에서는 안건의 성질에 따라 비밀 투표 또는 거수 등으로 결의한다. 관구평의원들은 결의된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 관구장과 공동 책임을 지며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관구평의원

159) 교회법전 627

132. 관구평의원들은 자신의 일차적인 임무를 방해하는 다른 직무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132-1

- 1) 관구평의원은 관구장의 협력자로서 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리고 영성과 사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 2) 관구평의원은 관구의 선익을 위해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과 은사에 충실하고, 회헌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관구장의 직무 수행을 돕는다.
- 3) 관구평의원들은 관구장이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기간 장상의 대리자로서 분원관구을 방문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관구장에게 상세하고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한다.

133. 관구평의원의 사임을 받아들이거나 해임할 경우, 관구장은 관구평의회에 동의를 얻고 총평의회에 사유서를 제출한다. 관구평의원의 사임, 해임은 총장이 총평의회에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관구평의원이 공석이 될 경우, 관구장은 관구평의회에 동의를 얻어 3개월 이내에 선출하여 차기 관구 총회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한다. 선출 방법은 관구평의회에서 결정한다.

134. 관구장이 관구평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할 중대한 사항들¹⁶⁰⁾

1) 청원자를 수련자로 받아들임

- 1) 첫 서약, 유기서약자의 서약갱신, 종신서약 승인 요청, 유기서약자 퇴회
- 2) 관구사무담당과 재정담당, 수련장, 양성담당, 본원 책임자, 분원책임자 임명과 해임
- 3) 관구의 재산의 취득, 소유, 관리, 양도, 대차,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의 개축허가 등 재정에 관련된 사항
- 4) 회원 개인명의 소유에 대한 유언서 작성과 양도변경 사항에 대한 허가
- 5) 지구와 분원의 설립, 통합, 폐쇄¹⁶¹⁾
- 6) 사도직 신설과 폐쇄
- 7) 관구 임시 총회 소집
- 8) 관구의 각 지침서 제정, 변경, 개정과 주요사항 결정
- 9) 관구 총회에 제출할 안건들

134-1

어떤 소비녀가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할 중대한 이

160) 교회법전 627,2

161) 교회법전 609,1; 616,1

유가 있으면 관구장은 관구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해야 하거나 수도회가 위임한 사도직이나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1년을 넘길 수 없다.¹⁶²⁾

135. 관구 자문회¹⁶³⁾

관구 자문회는 관구장을 도와 축성생활, 사도직, 양성, 행정에 관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논의하며 관구의 공동선과 일치를 위해 노력한다.

135-1

관구장이 소집하며 모임 횟수와 구성원은 관구상황에 맞추어 정한다. 관구장은 필요시에 자문회를 소집할 수 있다.

관구 자문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1) 관구의 영적, 사도적 측면과 연중 상황 검토
- 2) 감사위원 선출
- 3) 관구장, 관구평의회원과 모든 소비녀들이 관구자문회에 직접 제출하는 문제들
- 4) 회헌과 회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조항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초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상정할 준비

162) 교회법전 665,1

163) 교회법전 633

- 5) 생활비를 책정하고 분원에서 본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 결정
- 6) 분원 책임자가 관구장의 관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금액 결정

136. 관구사무담당

관구사무담당은 관구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구장이 임명하며, 관구평의원들 중에서 임명될 수 있다.

136-1

- 1) 종신서약자로 만 30세 이상이고 겸손하며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회원이어야 한다.
- 2) 관구 사무담당이 관구평의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의 기록을 위하여 관구평의회에 투표권 없이 배석한다.
- 3) 관구의 서기로서 공문서를 취급하고 문서들을 보관하며, 관구평의회의 회의록, 연혁, 역사를 기록 관리한다.
- 4) 관구 회원들에 관한 문서와 기록을 보관하고 관구의 문서고를 관리한다. 모든 문서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관구장의 허가 없이 문서 등을 아무에게나 보여주거나 줄 수 없으며,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 5) 관구 사무담당은 교회법, 교회에서 발행되는 공

문서 등을 입수하고, 주의 깊게 읽어 정확한 내용을 관구장과 관구평의회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6) 총사무담당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매년 관련된 보고를 한다.

137. 관구재정담당¹⁶⁴⁾

관구재정담당은 관구평의회 동의 얻어 관구장이 임명하며, 관구평의원들 중에서 임명될 수 없다.

137-1

- 1) 종신서약자로 판단력과 책임감이 있으며, 인내와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신앙이 견고한 회원이어야 한다.
- 2) 관구의 재산이 하느님의 선물이요, 회원들의 노동의 결실임을 인식하고, 청빈의 정신을 준수하며 관구의 사명 수행에 공정을 기할 것이다.
- 3) 관구평의회와 관구장의 감독을 받으며 회헌과 교회법, 국법에 따라 관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 4) 분원과 긴밀한 연락을 갖고 관구의 재정상황의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구평의회와 관구장에게 보고 한다.

164) 교회법전 636

- 5) 매년 예산과 결산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구장의 결재 후 총재정담당에게 보낸다.
- 6) 관구재정담당은 모든 분원의 월말 결산서를 받아 관구장에게 보고하며,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관구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한다.
- 7) 회원들의 건강관리와 진료에 관계된 업무를 기록, 보관하여 전수한다.
- 8) 동산, 부동산 그리고 증여에 관한 목록을 늘 보완하여 유지한다.
- 9) 분원 재정담당들에게 서류와 재정보고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 10) 수도권 총회와 관구총회에 제출할 관구 재정보고서를 준비한다.
- 11) 총재정담당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매년 재산상황을 보고한다.

138. 관구 재정 관리

관구는 법인으로서 재산을 취득, 소유, 관리, 양도할 수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회헌, 교회법, 국법에 준한다.¹⁶⁵⁾

138-1

- 1) 관구장은 정확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5) 교회법전 634,1; 635

록 분원의 회계장부와 비품대장을 확인한다.

- 2) 관구장은 증여 또는 설립 문서에 체결된 조건들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살핀다.
- 3) 수도회 총회의 결정에 따른 총원 기금을 납부한다.
- 4) 관구장은 관구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회법과 회헌에 따라 재산의 매매, 양도, 대차 등을 할 수 있다.
- 5) 관구장과 관구평의회는 분원 차원의 특별 지출을 위하여 사전 허락이 필요한 경우들을 규정한다.
- 6) 모든 분원은 생활비를 제외한 수입을 관구에 보내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생활비의 일정액을 애급할 것 이다.
- 7) 관구재정담당은 모든 예금통장 명의, 은행명, 예금종별, 금액 등을 조사하여 기록해 두고 6개월마다 재조사하여 관구장에게 보고한다.
- 8) 본원과 분원의 정상지출 이외의 경비를 위한 예비비를 책정한다. 예비비를 초과하는 특별지출은 관구장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
- 9) 관구에 소속된 본원과 기관의 책임자는 사도적 활동 내용과 소비녀들의 생활, 예산과 결산을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에 맞게 이행하였는지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관구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139. 관구본원과 본원에는 책임자를 둔다.

139-1 관구 본원 책임자

관구 본원 책임자는 관구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구장이 임명한다. 필요하다면 본원 살림담당을 따로 둘 수 있다.

1) 본원 책임자는 관구장과 거주지가 같을 경우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한다. 관구본원에 거주하는 서약자들 중에서 관구장에게 직속되지 않은 소비녀들을 책임지고 돌보며, 관구본원의 살림 일체를 맡는다.

2) 관구본원의 의식주에 관한 책임이 본원 책임자에게 있으며, 관구장은 관구본원의 생활에 관계되는 일일 경우 사전에 본원 책임자와 의논한다.

139-2 본원 책임자

본원 책임자는 관구장이 관구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본원 책임자는 관구장의 결정을 따르고 공동체의 일치를 촉진하며, 구성원들이 회헌과 회칙을 잘 지키도록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 기간은 6년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원 설립 시, 본원 책임자는 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우리 수도회 자체의 경비에 의한 것과 관할 지

역 교회의 기금에 의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보관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후임자는 변경사항들을 명확하게 수정, 보완한다.

140. 지구와 분원의 설립, 통합, 폐쇄

- 1) 관구평의회는 지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구로 나누어 운영한다. 지구의 범위, 운영, 지구장의 권한과 의무 등은 관구평의회와 함께 관구장이 결정한다.
- 2) 관구장이 관구평의회 동의 얻어 관할 교구장에게 알리고 지구와 분원을 설립, 통합, 폐쇄할 수 있다.
- 3) 지구와 분원의 설립, 통합, 폐쇄 시 관구장은 총평의회에 보고한다. 지구와 분원의 설립, 통합, 폐쇄의 목적은 우리 수도회의 정신에 맞고 교회와 인류에 봉사하며, 소비녀들의 수도생활이 보장되는데 있다. 지구와 지구, 분원과 분원은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의 일치와 성가정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
- 4) 지구와 분원을 다른 관구 지역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구평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며, 총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부

141. 지부 설립¹⁶⁶⁾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에 따라 교회와 인류에 봉사하며 공동체의 친교와 일치를 증진하고, 사도직의 활성화, 성소증가, 나아가 미래의 발전이 예견될 때 국내외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총장이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지부 설립을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지부의 합법적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지부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총장이 총평의회와 함께 결정한다.

142. 지부 구성

- 1) 지부 회원들이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수행할 수 있고, 지부운영을 위한 인적자원이 있어야 한다.
- 2) 적어도 3개 이상의 분원이 있어야 하고 서약자 수가 15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 3)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야 한다.
- 4) 지부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총장은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 폐쇄를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지부 폐쇄 시 재산 처리는 총장이 총평의회와 함께 결정한다.¹⁶⁷⁾

143. 지부장

166) 교회법전 581

167) 교회법전 616

교회의 가르침과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에 따라 섬김의 자세로 지부를 이끌어간다.¹⁶⁸⁾ 지부장은 총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지부의 영적, 사도적 상황과 재정상태를 총장에게 1년에 한번 보고한다.

- 1) 지부장은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평의 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 2) 지부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¹⁶⁹⁾
- 3) 지부장은 임기 중 적어도 1회 분원을 방문한다.
- 4) 지부장은 수도회 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이다.

143-1

지부장은 장상에게 다음 사항을 상정할 수 있다.

- ① 지부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
- ② 인적자원 수급 및 재원지원 요청
- ③ 지부의 지위변경 요청

144. 지부총회

지부총회는 지부 회원들의 일치를 도모하며 지부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복음과 설립은사에 따라 수도회 총회의 결정과 방향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⁷⁰⁾ 모든 지부 회원은 지부 총회에 자유로이 의

168) 교회법전 618

169) 교회법전 623

170) 교회법전 631,1

견을 제시할 수 있다.¹⁷¹⁾

지부총회는 지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나 총평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규정은 회헌과 회칙을
따라야 하고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을 이어나가
야 한다.

144-1 지부총회 소집

지부총회는 수도회 총회 전·후로 개최한다.

1) 수도회 총회 전 지부총회

지부장이 지부평의회 의 동의를 얻어 적어도 회의
개최 적어도 3개월 전에 소집 공고한다. 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① 수도회 총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실행을 검토한다.
- ② 지부 전체 생활(회원현황, 영적생활, 양성, 사
도직, 경제현황 등)을 지침에 따라 반성하고 평
가하고, 지부의 생활과 사명을 보다 활기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한다.
- ③ 수도회 총회에서 검토할 자료를 준비하며, 제안
사항을 선정한다.
- ④ 수도회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2) 수도회 총회 후 지부총회

수도회 총회 후 지부총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171) 교회법전 631,1. 3

내에 개최한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수도회 총회에서 결정된 의안에 따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며, 지부총회의 결정사항을 총평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회원들에게 통보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② 지부 총회 결정 사항은 차기 지부 총회까지 유효하며 차기 지부 총회에서 변경, 폐지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다.

144-2 지부평의원¹⁷²⁾

- 1) 총장은 지부 회원들과 지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2-3명의 평의원을 임명한다.
- 2) 지부평의원은 지부장을 도우며, 지부 행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한다.
- 3) 적어도 월 1회 지부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
- 4) 지부평의원의 자격은 종신서약자라야 한다.

재입회

145. 수련기를 만료했거나 유기서약이나 종신서약 후에 합법적으로 퇴회한 사람이 재입회를 원하는 경우, 총장이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허락할 수 있다.

172) 교회법전 596·627

이때 다시 수련기를 거치지 않으나, 첫서약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합당한 시험 기간과 종신서약 전에 실행할 서약 기간은 교회법 제655조와 제657조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¹⁷³⁾

퇴회

146. 총장은 종신서약자가 전속하거나 수도회를 떠나고자 할 때 교회법 제684-693조의 규정을 지키면서 총평의회 동의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종신서약자는 우리 수도회로부터 다른 회로 전속할 수 없다. 다만 양편 수도회의 총장이 총평의회 동의 얻으면 전속을 허락할 수 있다. 전속하려는 자는 양편 수도회의 총장과 총평의회에 전속 이유를 명시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¹⁷⁴⁾ 전속 시험 기간은 교회법 제684조 2항을 따른다.

2) 종신서약자는 수도회를 떠날 수 없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가 있어 하느님 앞에서 심사숙고한 다음, 서약 의무의 면제를 바라는 청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면, 총장은 총평의회 의견 첨부하여, 서울 대교구장에게 허락을 요청한다.¹⁷⁵⁾ 수도회를 떠날

173) 교회법전 690,1

174) 교회법전 684,1

175) 교회법전 691,1

허락을 받은 후 본인에게 알리는 동시에 서약의 의무는 면제된다.

- 3) 종신서약자가 중대한 이유로 총장에게 봉쇄 해제를 청원하면 총장은 총평의회의 결의 투표로 허락할 수 있으나 1년 이상은 넘지 말아야 한다.¹⁷⁶⁾ 이 기간 동안 그 소비녀는 총장의 책임 아래 있으며, 공동생활의 의무에서는 면제되지만 가능한 한 서약의 의무는 지킨다. 수도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¹⁷⁷⁾
- 4) 해당 회원이 규정된 퇴회 과정을 밟지 않고 수도회를 떠났을 때, 총장은 그 당사자가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6개월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교회법에 따라 퇴회 절차를 밟는다.

146-1

청원자나 수련자는 본인이 원하면 수도회를 떠날 수 있다. 총장은 총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청원자나 수련자를 퇴회시킬 수 있다.

147. 관구장은 관구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다.

176) 교회법전 686,1

177) 교회법전 687

1) 서약 기간이 만료된 유기서약자는 본인이 원하면 수도회를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서약 기간 중에 떠나고자 하면, 관구장은 관구평의회 동의 얻고 관할 교구장에게 추인을 받아야 한다.¹⁷⁸⁾ 또한 유기서약이 만료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구장은 관구평의회 동의 얻어 서약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¹⁷⁹⁾

~~2) 청원자나 수련자는 본인이 원하면 수도회를 떠날 수 있다. 관구장은 관구평의회 의견을 들어 청원자나 수련자를 퇴회시킬 수 있다.~~

2) 신체적, 정신적으로 수도생활을 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전문가의 판단을 받은 소비녀에게는 서약 갱신이나 종신서약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 단, 수도회의 소홀함이나 수도회에서 행한 일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예외이다.¹⁸⁰⁾

148.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은 그 사실 자체로 수도회에서 제명된 자로 간주된다.¹⁸¹⁾

1) 가톨릭 신앙에서 공공연하게 떠난 자

2) 혼인을 맺었거나 국법상만으로도 혼인을 시도한 자

178) 교회법전 688

179) 교회법전 689,1

180) 교회법전 689,2

181) 교회법전 694,1

이러한 경우에 총장은 총평의회와 함께 지체 없이 증거를 모은 후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을 내려 제명이 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¹⁸²⁾ 또한 교회법 제1395조, 제1397-1398조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른 회원은 수도회에서 제명된다.

149. 총장은 유기서약자 또는 종신서약자의 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총평의회와 함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을 내린 다음 교회법 제694-704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을 것이다.

- 1) 교회법 제696조 1항에 해당되는 소비녀는 중대한 과실과 비행을 상습적, 반복적 또는 공개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제명된다. 제명 절차와 효과에 대한 내용은 교회법 제697조에 따른다.
- 2) 우리 수도회에 중대한 외적 손해를 끼쳤거나 중대한 악표양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소비녀를 수도회에서 내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총장은 제명 절차를 시작한다.¹⁸³⁾

150. 수도회에서 합법적으로 퇴회하였거나, 제명된 자는 수도회에 머무는 동안 행한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수도회를 떠

182) 교회법전 694,2

183) 교회법전 695,1

나는 이에게 복음적인 애덕을 보여 주어야 한다.¹⁸⁴⁾

150-1 퇴회와 제명

회헌 제147조에 따라 수도회는 떠나는 회원에게 애덕을 실천해야 한다. 그 기준은 교회법 제702조를 참조하며,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 서원 연한 + 상황참조를 하여 적용한다.

회헌준수와 권고

151. 성가소비녀는 복음적 권고를 온전히 성실하게 지킬 뿐 아니라 회헌과 회칙에 따라 성화와 완덕에 나아가도록 자신의 생활을 정화하여 수도자 신분의 완성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¹⁸⁵⁾

152. 성가소비녀는 수도생활의 거울인 회헌을 개인과 공동체로서 충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¹⁸⁶⁾ 소비녀는 회헌의 내용을 잊어버려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우리 수도회의 설립 정신과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

153. 우리 수도회의 회헌을 새로운 시대에 적응시키고 해석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유권 해석은 교구장에 유보되며, 교구장의 승인이 필요

184) 교회법전 702

185) 교회법전 598,2

186) 초기 197

하다. 승인된 회헌에서 유권적으로 공포된 내용들은 공포된 대로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회칙의 유권 해석은 총회의 권한이다. 총회 밖에서는 총평의회와 확대총평의회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그 효력은 다음 총회까지만 유효하다.

154. 회헌의 제정, 변경, 개정은 서울 대교구장의 승인과 동의가 있어야 하며¹⁸⁷⁾ 회칙의 제정, 변경, 개정, 폐지는 총회의 권한에 속한다.¹⁸⁸⁾

관구 규정과 관구 주요 지침의 제정, 변경, 폐지는 총평의회 승인을 받는다.

155. 회칙과 지침에 포함된 규범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총장이 총평의회 동의를 얻어서 관면을 줄 수 있다. 특별한 경우 회헌에 대한 관면을 받고자 하면 교구장 주교에게 청해야 한다.¹⁸⁹⁾

개인이나 공동체에 주어진 관면은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유효하다.

187) 교회법전 587,2

188) 교회법전 587,4

189) 교회법전 595,2

부록

회헌개정사

1944.	세칙준비
1945.7.	노기남 주교 승인
1949. 2. 3	초기회원 교황청 추인
1976. 3. 19	개정 ‘성가정의 빛’
1986. 12. 20	개정 ‘회헌과 규칙’
2007. 3. 7	개정 ‘성가의 빛’
2013. 4. 27	개정 ‘성가의 빛’